



## 주요 언론조정 · 중재 사례

제 1 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35
제 2 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79
제 3 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117
제 4 장	손해배상 사례	135
제 5 장	기사 노출 · 검색 차단 사례	159
제 6 장	기타 사례	175





## 제 1 장

# 정정보도 게재 사례

## 제 1 장

## 정정보도 게재 사례

### 사례. 1

조기영어교육 폐해로 우리말 교정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730·731, 2017서울조정732·733(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b>신 청 인</b>	이○○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조선닷컴)
<b>중 재 부</b>	서울제1중재부
<b>접 수 일</b>	2017. 4. 13.
<b>처리결과</b>	각 조정성립(정정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기영어교육의 폐해 때문에 우리말이 서툴러 ‘키즈 스피치 학원’을 찾는 초등학생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조정대상 보도에 한 키즈 스피치 학원에서 신청인 등이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을 촬영·게재하고, 해당 학원에서 ‘한국어 어순 교정’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 이에 대해 해당 사진에 노출된 초등학생인 신청인은 한국어 어순 교정수업이 아니라 스피치 스킬을 배우기 위한 수업이었고,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해당 보도사진은 조기 영어교육과 무관한 수업이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성생님” 영어 조기교육에 허꼬인 아이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7년 4월 12일자 10면, 조선닷컴 4월 12일자 사회면)

## ■ 내 용

“엄마, 나 먹었어. 밥을”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부 임모(36)씨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다. “학교에서 밥 먹었니”라고 묻자 아들이 영어식 어순으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임씨의 아들은 다섯 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녔고, 집에서도 되도록 영어를 쓰도록 교육받았다. 임씨는 “아들이 평소에 ‘지금 time(시간) 몇 시야’처럼 영어 단어를 섞어서 말해도 ‘영어 잘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말 어순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러다 우리말 못한다고 놀림당할까 봐 부랴부랴 키즈(어린이) 스피치 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최근 ‘키즈 스피치 학원’을 찾는 초등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일대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스피치 학원만 10여 곳이 생겼고, 일대일 개인 과외나 그룹 과외도 성행하고 있다. 과거 웅변 학원이 유행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학원을 찾는 목적이 달라졌다. 웅변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말 발음이나 어순을 교정하려고 학원을 찾는 초등학생이 늘어난 것이다. 영어 유치원과 해외 연수 등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자주 쓰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정작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말이었던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반포동의 한 스피치 학원에서는 “가나다라 마바사…” “가갸겨겨고교…” 같은 발음 연습이 한창이었다. 강사 임송하(29)씨가 학생 두 명을 앉혀놓고 한글 자모음 발음표를 읽고 있었다.

이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한글을 처음 배우는 유아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다. 김민호(가명·7)군은 “ㄹ(리을) 발음이 제일 어렵다”며 “‘라면’ 같은 단어를 말할 때는 친구들이 ‘미국 사람 같다’고 놀린다”고 했다. 다섯 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조기 영어 교육을 받은 김군은 ‘라면’을 ‘뤄면’이라고 발음한다.

학원을 찾는 초등학생 상당수는 ‘ㄹ’을 영어식 ‘r’이나 ‘n’으로 발음하고, ‘ㅅ(시옷)’을 ‘sh’ 발음과 혼동한다고 한다. 서울 대치동의 한 스피치 학원 대표는 “‘선생님 수업해요’라고 할 때도 ‘sh’ 발음을 한껏 섞어서 ‘성쌤님 슈업해요’라고 한다”며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학원을 찾는 아이들 대부분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영어 유치원을 막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 때문에 교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김모(28)씨는 “한 반에 절반 이상이 영어 유치원 졸업자인데 그중 3~4명은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수업을 못 따라간다”며 “아이들이 ‘pink(핑크)’는 알지만 ‘분홍색’은 모르고, 좋아하는 곤충을 물으면 ‘ladybug(무당벌레)’라고 영어로 대답하면서 우리말로 ‘무당벌레’가 뭔지 모른다”고 했다.

김씨는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면, 외국인처럼 ‘Um...(음)’거리면서 말을 더듬는 학생도 많다”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는 주부 장모(36)씨는 “지난달 학부모 총회에 가니까 우리 아이가 ‘오마이갓(oh, my god · 이럴 수가)’ 같은 영어 감탄사를 자주 쓰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까지 물들었다고 핀잔을 들었다”며 “스피치 과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김순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모국어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영·유아 시기에 외국어를 과도하게 교육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둘 다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모국어 어휘나 문장 구조에 익숙해야 나중에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10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영어 배우려다 우리말 못해 스피치 학원 찾아 발음 교정”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1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성생님”영어 조기교육에 혀 꼬인 아이들의 삽입 사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4월 12일자 사회면에 “성생님” 영어 조기교육에 혀 꼬인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서울 서초구 한 키즈 스피치학원에서 강사가 초등학생 3명에게 “한국어 어순 교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아이들은 기사와 전혀 무관하게 발표력 향상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조기영어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영어 조기교육” 기사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지난 4월 12일자 10면 「“성생님” 영어 조기교육에 혀 꼬인 아이들」 제하의 기사에 사용된 보도 사진은 조기 영어 교육과는 무관한 발표력 향상 수업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2017년 5월 4일(목)까지

가. 제1항의 보도문을 조선일보 10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영어 배우려다 우리말 못해 스피치 학원 찾아 발음 교정)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나. 조선닷컴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4. 24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영어 조기교육’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7년 5월 3일자 10면, 조선닷컴 2017년 5월 3일자 ‘바로잡습니다’ 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2

정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 대학생들이 동원됐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734·735 정정·손배청구
<b>신 청 인</b>	최○○ 외 3인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제이티비씨(JTBC)
<b>중 재 부</b>	서울제2중재부
<b>접 수 일</b>	2017. 4. 14.
<b>처리결과</b>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모 정당의 지역 경선에 특정 대학교 학생들이 동원되는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버스에 탑승중인 신청인들의 사진을 공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학교 행사에 가던 중 찍은 개인적 사진일 뿐,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각 10,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해당 사진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정보도 및 신청인들에게 각 250,000원씩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단독]총학 출신 국민의당 관계자, ○○대생 동원 ‘개입’』 (2017년 4월 11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익산서 광주로, 당 관계자 ‘개입’』 (2017년 4월 12일자 NEWS 아침& 프로그램) 제하의 보도

## ■ 내 용

- ▷ 앵커 : 지금부터는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10일) JTBC는 지난달 국민의당 광주 지역 경선에 ○○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동원됐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학생들을 실어나른 사람은 국민의당 간부 출신이고, 현재 전북도당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이 직접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 기자 : 국민의당 광주 전남 제주 지역 경선이 열린 지난달 25일, ○○대학교 학생 200여 명은 45인승 버스 6대에 나눠타고 전북 ○○에서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버스를 예약한 사람은 국민의당 소속 전국청년부위원장 출신의 김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대 총학생회 출신으로 현재 전북 ○○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 총학생회 출신의 전 간부도 “김 씨가 국민의당과 연관돼 있는데 이번 학생 동원 건에 김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이 동원됐고 총학 뒤에는 평소 학생회 선거에 깊이 관여해온 김 씨가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대 후배들이 많이 도와준 것은 맞다”면서도 “누구를 찍으라고 시켜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 학생 동원 의혹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벌하겠습니다.
- ▷ 기자 : 광주 선관위와 전북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위해 합동 조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오늘은 버스 회사 관계자와 ○○대 총학생회장을 조사했습니다.

## 사건처리결과

###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대생 국민의당 경선 동원』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11일 『총학 출신 국민의당 관계자, ○○대생 동원 개입』 제목의 보도 중 일부 학생들이 버스에서 찍은 사진 2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 속 학생들은 당시 학교 행사에 가던 중이었고 국민의당 광주 경선 동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2017년 6월 16일까지

가.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제1항의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신청인들 사진 2건 포함)으로 한다.

나. JTBC 홈페이지 <뉴스-정치>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하고, 각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해 검색되도록 한다. 제1항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각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다.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보도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 및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 3. 피신청인은 2017년 6월 16일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 4.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 5. 피신청인이 제2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6. 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대생 국민의당 경선 동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6월 16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6월 16일자 ‘뉴스-정치’ 섹션 초기화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3

가상화폐거래소인 신청인 회사의 회원정보가 해킹당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7서울조정1271·1272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주식회사 뉴스1 (뉴스1코리아)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7. 7. 27.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가상화폐거래소인 신청인 업체의 직원 PC가 해킹당하면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최대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 축소 및 해킹시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가상화폐 탈취 피해는 개인정보 해킹 건과 관련이 없으며, 피해규모나 해킹시기를 조작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수 차례에 걸쳐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6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계좌 무단인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중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정정보도는 반론보도가 적합하다고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규모 축소나 해킹시기 조작, 피해보상 회피 의혹 등 검찰 수사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1

- 뉴스1코리아 - 『[단독]“수십억 털렸다”...○○○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일자 산업면)

## ■ 내 용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 해킹으로 금전피해를 당한 100여명의 회원들이 단체소송에 나선다. ○○의 직원PC가 해킹되면서 수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돈이 빠져나가는 등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2일 ○○ 해킹으로 금전피해를 입은 회원 100여명이 만든 ‘피해자 모임 카페’에 따르면 이들은 ○○을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대표인 A씨는 “○○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카페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할 예정”이라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경찰 사이버수사과에 수사도 요청해놓은 상태다. ‘○○’ 직원들이 이번 해킹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의 서버가 아닌 ○○ 직원의 PC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부자가 연루된 해킹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일 ○○은 지난 29일 직원의 PC가 해킹당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다고 시인했다. ○○ 관계자는 “본사 서버가 아닌 직원 PC가 해킹을 당한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이동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 회원 70만명의 3%인 2만명 수준이지만 이는 ○○에서 밝힌 피해자 규모여서 실제 피해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커로 추정되는 침입자들은 ○○ 회원들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를 해킹한 뒤, ○○ 본사 직원으로 위장해 직접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OTP(무작위로 생성되는 번호 인증방식) 번호를 빼내는 방식을 활용했다.

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OTP 정보를 주지 않은 고객들도 주민등록번호 및 이메일 비밀번호가 해킹돼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하나의 방식이 아닌 여러 해킹 방식을 총동원한 탓에 북한 또는 대규모 해커 집단이 ○○ 해킹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 관계자는 “직원 PC가 외부공격을 받아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신고했고 현재 공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의 가상화폐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으며 현재 예치금 실사중이므로 곧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ISA는 이날 피해업체인 ‘○○’과 공조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KISA 관계자는 “여러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간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와 피해 규모는 조사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정대상보도2

### ■ 뉴스1코리아 - 『[단독]개인정보 유출한 ○○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뺌』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일자 산업면)

#### ■ 내 용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가상화폐거래소 ○○이 수십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은 “통신판매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따른 전체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의 거래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지만 그간 손해보험에 들지않고 수개월간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은 “보험가입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3일 ○○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가상화폐거래소로 서비스를 시작한 ○○은 통신판매업자로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아직 가상화폐가 공식 화폐로 인정받지 못해, 이를 취급하는 플랫폼업체인 ○○도 일종의 온라인쇼핑몰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다. 즉 기존 금융거래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험거운 규제를 받았던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아닌 탓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금융거래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연히 금융거래업체가 갖춰야 할 손해보험 의무가입 여부 역시, ○○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은 지난 4월 손해보험 상품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해왔다. 실제 ○○의 거래액은 지난 5월과 6월 역대 최고치에 달하며 회원수도 70만명으로 급증해 국내 1위 업체로 도약했다.

해킹된 사실이 밝혀진 지난 1일, ○○은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 계약현황을 뒤늦게 삭제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피해자 대표 A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홈페이지에 광고돼 있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 법무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보험이 만료돼 보험 상품에 따른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통신판매업자인 탓에 전체 보상의무는 없고 보통 이같은 사례는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해 배상액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기 전에 실제 계좌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할 것이며 법적 의무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 측의 보상계획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체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달리 ○○이 ‘인터파크’ ‘여기어때’ 등의 해킹 피해사례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액만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것 외에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보안업계에 따르면 ○○에서 무단 이체된 피해액 수십억원 중 일부분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로 넘어간 이상, 범인을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통한 전체 보상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현재로선 가상통화가 감독대상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으로 가상통화 규율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거래소들의 운영이나 거래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조정대상보도3

- 뉴스1코리아 - 『[단독]“정상계좌라는데 털렸다” ○○, 피해규모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4일 산업면)

#### ■ 내 용

해킹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준 이용자 계좌에서도 돈이 무단으로 인출된 것으로 밝혀져, ○○이 개인정보 유출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 해킹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의 ‘개인정보 유출조회’에서 정상계좌 판정을 받았는데 계좌의 돈이 사라진 피해자들이 수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 해킹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 1일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3일 ○○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조회했더니 ‘회원님 계정은 안전하다’고 나와서 안심했는데 이날 내 계좌에서 80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를 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금전피해자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분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해액을 줄여 보상액을

줄이려는 의도로 피해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금전탈취를 당한 피해자들은 비밀번호를 직접 탈취당한 사례보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 ○○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 피해가 아닌 이용자 책임으로 물고가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정상계좌로 확인된 피해자 B씨의 계좌 유출 화면. 해커는 1분도 안되는 시간에 B씨의 비트코인을 탈취했다.

피해자들은 ○○이 지난 3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도 꼼수라고 지적한다. 또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것도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피해자모임 대표 A씨는 “피해액이 최소 100억원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회사 서버가 아닌 직원이 집에서 쓰는 PC로 자꾸 특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체소송 참가자가 500여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번 해킹에 ○○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경에 압수수색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3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이 포함돼 있다. 수사는 대검에서 주도하게 된다.

한편 ○○은 지난 4월 손해보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이를 갱신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이 게재했다가, 해킹 사건이 터지자 이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조정대상보도4

■ 뉴스1코리아 - 『3만명 고객정보 털린 ○○…5월부터 해킹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5일자 산업면)

■ 내 용

가상화폐거래소 ○○의 해킹 피해가 지난 6월 29일보다 훨씬 이전인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피해자 규모를 3만명으로 축소해 정부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만큼, 해킹당한 시기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5일 ‘○○’ 해킹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 해킹 사실을 시인한 지난달 29일 이전인 지난 5월부터 계좌 해킹으로 의심되는 무단인출 사례가 수십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월에 발생한 해킹 피해와 마찬가지로, 5월에도 피해자들의 이동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미리 파악하고 ○○의 직원으로 위장해 OTP번호(무작위로 생성되는 번호 인증방식)를 빼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비밀번호를 직접 탈취당한 피해자도 적지 않다.

5월에 피해를 당했다는 A씨는 “내 이동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5월 21일, ○○ 직원으로 위장해 OTP 번호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을 요구했다”며 “이들이 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해킹은 그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 역시 “5월 2일, 해킹이 의심되니 해외IP 접속을 차단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나 OTP번호가 아닌, 단지 SNS 본인 인증번호만 알려줬는데 계좌의 돈이 무단인출됐다”며 “○○이 밝힌 피해자 3만명 집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5월에 이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지만 “○○과 경찰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도 6월 이전부터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 관계자는 “해킹에 따른 피해가 아닌 개인 부주의일 가능성이 커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무단인출 사례의 연관성은 검·경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사건의 연관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

한편 ○○ 피해자 모임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무단인출 사례를 분리하는 ○○의 태도가 전액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0여명의 피해자들이 동참했으며, 변호사 선임을 준비중이다. 또 주중 네이버 카페 외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 모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3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에는 개인 정보 침해사고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이 포함돼 있다. 수사는 대검에서 주도하게 된다.

### 조정대상보도5

- 뉴스1코리아 - 『[단독]○○ 해킹 피해 지속…“어제도 수억원 털렸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산업면)
- 내 용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피해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고객계좌에서 돈이 무단인출되는 2차 해킹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피해가 지난달 말 처음으로 공론화되면서 경찰과 검찰까지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도 해커들의 공격에 ○○이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운영중단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쯤, ○○을 이용해온 피해자 A씨는 계좌에 있던 2100만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무단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A씨는 “○○에서 보낸 메일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메일을 확인했는데 알고보니 ○○으로 위장한 해커가 보낸 것이었다”며 “그렇다고 별다른 숫자를 기입하거나 등 해킹에 응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단순히 메일만 확인했는데도 이후 계좌에 돈이 무단 인출된 것을 알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시흥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정작 ○○에선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피해자 A씨와 같은 사례는 지난 주말에만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액수로는 최소 7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A씨의 사례는 앞서 공개된 보이스피싱과 비밀번호로 인한 해킹이 아닌 이메일을 통한 해킹 수법이라 추가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하다.

이번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정상계좌’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좌의 돈이 무단인출된 것으로 확인돼 ○○ 측의 안일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또 ○○이 시인한 것과 달리 이메일과 이동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액, 구매 시기 등 구체적인 계좌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면서 “○○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 개인정보 유출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출금 정지’ 조치를 내려 이들 계좌에 대해서는 피해여부를 확인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의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 측은 여전히 “개인정보유출과 보이스피싱 등 해킹 피해의 연관성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관계자는 “해킹에 따른 피해가 아닌 개인 부주의일 가능성이 커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 피해자 모임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무단인출 사례를 분리하는 ○○의 태도가 전액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0여명의 피해자들이 동참했으며, 변호사 선임을 준비중이다. 주중 네이버 카페 외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 모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까지 됐다는 11명의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범죄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이 벌어진 과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아직 해킹 피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킹사건과 관련 경찰의 가상화폐 인출 신고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부는 ○○ 직원 PC 해킹 사건 자체를 수사하고 있다.

#### 조정대상보도5

#### ■ 뉴스1코리아 - 『[단독]책임 회피하던 ○○ “무단인출 피해, 보상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8일자 산업면)

#### ■ 내 용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하고 계좌 ‘무단인출’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온 가상화폐거래소 ○○이 뒤늦게 무단인출 피해자들에게 보상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못믿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고객자산위원회’를 마련하고 이번 해킹 사건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지난 17일부터 별도 피해 접수 현황 창구도 만들었다.

앞서 3만명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10만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과 별개로 무단인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처음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조사 이후에나 보상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펴왔다.

○○ 관계자는 “신고 접수 페이지를 개설해 사고 여부를 접수하고 고객자산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검·경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해킹 원인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 입장에도 피해자들은 “또다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손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전액 보상할 능력이 없는 만큼, 여전히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피해자 A씨는 “피해자 현황과 해킹 피해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소송에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해킹 방식이 다양한 데다 ○○의 내부 문서까지 유출돼 서버 해킹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끝까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되자 3만여명의 회원들에게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회원들의 무단 인출 사실이 수백여건 확인되면서 3만명이라고 밝힌 피해자 규모 자체에도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 측이 시인한 이메일과 전화번호 유출 외에도 고객들의 구체적인 계좌 정보와 ○○ 내부의 사업계획 문서까지 유출된 만큼, 검찰과 경찰에서도 ○○ 측에 서버 해킹 사실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 지난 4월 손해보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이를 갱신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양상이다.

○○ 피해자 모임은 ○○ 측이 “보상 여부를 별도 심사 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무단인출 사례를 분리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0여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변호사 선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1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도 지난 3일부터 합동조사단을 꾸려 압수수색을 비롯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커는 ○○의 서버를 공격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후, 충북대 등 국립대 서버를 우회해 그간 무단인출 및 보이스포싱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뉴스1 코리아 인터넷사이트(<http://www.news1.kr>)의 초기화면 기사목록 최상단에 [별지] 기재 각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3일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각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위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각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게재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1. 제목 : 『“수십억 털렸다”…○○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2일 산업(IT/과학)면에 “수십억 털렸다”…○○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 「○○의 직원PC가 해킹되면서 수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돈이 빠져나가는 등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대표인 A씨는 “○○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커로 추정되는 침입자들은 ○○ 회원들의 전화 번호와 계좌정보를 해킹한 뒤, ○○ 본사 직원으로 위장해 직접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OTP(무작위로 생성되는 번호 인증방식) 번호를 빼내는 방식을 활용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직원 PC 해킹을 통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가상화폐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은 아니었고, 가상화폐 계좌에서 가상화폐가 무단으로 인출된 피해자가 수만 명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에 계좌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한 해커가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OTP 번호를 빼내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1. **제목** : 「[단독]개인정보 유출한 ○○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췌」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3일 산업(IT/과학)면에 「[단독]개인정보 유출한 ○○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가상화폐거래소 ○○이 수십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은 “통신판매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따른 전체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근 회원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뿐 보상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서는 「특히 ○○의 거래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지만 그간 손해보험에 들지 않고 수개월간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이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은 “보험가입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 경우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사실이며, ○○이 고객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해킹 사고로 인하여 보험 갱신이 되지 않는 것임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3〉

1. 제목 : 「“정상계좌라는데 털렸다” ○○, 피해규모 축소 의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4일 산업(IT/과학)면에 「“정상계좌라는데 털렸다” ○○, 피해규모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 「피해자모임 대표 A씨는 “피해액이 최소 100억 원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회사 서버가 아닌 직원이 집에서 쓰는 PC로 자꾸 특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체소송 참가자가 500여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번 해킹에 ○○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경에 압수수색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피해액이 최소 100억 원을 넘는 것은 아니고, ○○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4〉

1. 제목 : 「3만 명 고객정보 털린 ○○…5월부터 해킹당했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5일 산업(IT/과학)면에 「3만 명 고객정보 털린 ○○ … 5월부터 해킹당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의 해킹 피해가 지난 6월 29일보다 훨씬 이전인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피해자 규모를 3만 명으로 축소해 정부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해킹당한 시기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이 피해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해킹 시기를 조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서는 「5월에 이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지만 “○○과 경찰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도 6월 이전부터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개인정보 유출 이외에 별도의 해킹이 6월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6월 이전에 고객들에게 발생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고를 알았다는 내용으로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5〉

1. **제목** : 「[단독]○○ 해킹 피해 지속…“어제도 수억 원 털렸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10일 산업(IT/과학)면에 「[단독]○○ 해킹 피해 지속…“어제도 수억 원 털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피해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고객계좌에서 돈이 무단인출되는 2차 해킹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피해가 지난달 말 처음으로 공론화되면서 경찰과 검찰까지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도 해커들의 공격에 ○○이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운영중단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해킹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 직접 해커들의 공격에 당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에서 「또 ○○이 시인한 것과 달리 이메일과 이동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액, 구매 시기 등 구체적인 계좌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면서 “○○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구체적인 계좌정보는 유출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서 「현재 ○○이 개인정보 유출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출금 정지” 조치를 내려 이들 계좌에 대해서는 피해여부를 확인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의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은 고객 보호를 위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계좌 인출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6〉

1. **제목** : 「[단독]책임 회피하던 ○○ “무단인출 피해, 보상하겠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18일 산업(IT/과학)면에 「[단독]책임 회피하던 ○○ “무단인출 피해, 보상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이같은 ○○의 입장에도 피해자들은 “또다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손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전액 보상할 능력이 없는 만큼, 여전히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피해자 A씨는 “피해자 현황과 해킹 피해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소송에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해킹 방식이 다양한 데다 ○○의 내부 문서까지 유출돼 서버 해킹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끝까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손해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액을 보상할 자력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고객자산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 서버가 직접 해킹 당했음이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 회원 개인정보 유출’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지는 2017년 7월 2일 산업면 『[단독]“수십억 털렸다”…○○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 2017년 7월 3일 산업면 『[단독]개인정보 유출한 ○○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뺌』, 2017년 7월 4일 산업면 『[단독] “정상계좌라는데 털렸다” ○○, 피해규모 축소 의혹』, 2017년 7월 5일 산업면 『3만명 고객정보 털린 ○○…5월부터 해킹당했다?』, 2017년 7월 10일 산업면 『[단독]○○ 해킹 피해 지속…“어제도 수억원 털렸다”』, 2017년 7월 18일 산업면 『[단독]책임 회피하던 ○○ “무단인출 피해, 보상하겠다”』 제하의 각 기사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주식회사 ○○○○○○닷컴(이하 ‘○○’이라 함) 직원의 PC가 해킹되면서 수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 축소 및 해킹시기 조작 가능성 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자 규모를 3만 명으로 축소해 정부에 신고하거나 해킹 시기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 피해보상을 회피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은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는 가상화폐 탈취 피해는 위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아니며, 위 개인정보 해킹 사건 이전에도 발생하던 사고들로서 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경찰 수사 및 KISA,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고, ○○ 서버가 직접 해킹 당하거나 회원들의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은 위 개인정보 해킹 당시 고객 보호를 위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계좌 인출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판결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원들에게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가. <뉴스1(<http://www.news1.kr/>)> 산업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제1항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 기재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나.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2017. 8. 24.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뉴스1코리아 - 『‘○○ 회원 개인정보 유출’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산업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4

국방부가 여군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7서울조정1995, 2017서울조정1996(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국방부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닷컴)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7. 11. 2.
처리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국방부가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43년 만에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여군 병사 모집제도 부활을 검토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검토계획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신청인은 내부 아이디어 공모전에 해당 안건이 제안되었을 뿐 공식적으로 채택된 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피신청인은 육군 내부 문건을 확인하였으며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것이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중재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언론사의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보고, 국방부에서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계획한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1

- 『여군 병사 43년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7년 11월 1일자 1면, 아시아경제닷컴 2017년 11월 1일자 정치면)

## ■ 내 용

국방부가 현역병 군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43년만에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성 일자리창출과 군내부의 여성인력 확대 차원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의경, 공익근무 요원 등 전환대체복무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을 현역으로 전환해 연간 7만여명의 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연간 3만여명의 병력부족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할 경우 부족해지는 병력을 일단 여군 병사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여군 모집병의 복무기간을 놓고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또한 모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군 병사가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군 병사모집제도의 법적근거에 대해 헌법 제 2장 11조 평등권, 39조 국방의 의무,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를 근거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여성의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병력 50만명 수준의 감축과 병사 복무 기간의 18개월 단축 등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여군의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를 감안해 여성의 일자리창출과 군내부의 여성인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 현재 국군의 여군 비율은 5.6%(약 1만 여명)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군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약 15%(약 2만 5천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군병을 모집하기 이전에 여군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여군의 지휘관 보직제한, 모호한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조정대상보도2

- 『男軍과 동일하게 21개월 복무…월급은 특별수당 포함 3배』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7년 11월 1일자 2면, 아시아경제닷컴 2017년 11월 1일자 정치면)

#### ■ 내 용

국방부가 여군병사모집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TV토론이나 유세 등을 통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에 따라 증장기 과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정부에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연간 3만 3000여명이 부족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 3000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준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 수준인데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가용자원이 부족해진다.

국방부는 여군병사를 모집한다면 현재 예비군 관리대대 등 향방 상근부대 8000여개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들을 현역으로 대체하고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여군병사의 경우 출퇴근이 가능해 현재 근무중인 남군병사와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군을 위한 추가시설 확보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여군병사가 상근부대에 적응할 경우 여군의 장점을 활용한 인사행정, 정보, 군종, 정훈 등 병과에 대폭 확대시켜 적용시킬 방침이다.

특히 여군 병사는 신병교육대에서 남군과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기간은 상근예비역의 교육기간(4주)과 동일하게 교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남군 병사가 방공포 부대와 정밀유도무기를 다루는 부대에 배치될 경우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1~2개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군 병사는 상근예비역의 임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기간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여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맞췄다. 다만 군복무 중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남군병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물론 가산점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문제는 남군병사와 여군병사에 대한 월급의 형평성 문제다. 국방부는 일단, 징병제인 남군과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지원률이 떨어질 것으로 고려해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급 67만원에 특별수당 75만원을 합쳐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약 17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근예비역의 공백을 메울 경우 군은 연간 14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남군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병장 기준 월급을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886원으로 88%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요구안대로 하면 남군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상병은 36만6229원, 일병 33만1296원, 이병 30만6130원이 된다. 여군병사에 비해 30%수준이다.

## 조정대상보도3

- 『한국여군 시초는 교련교사, 1949년 32명 양성...여군병사는 1953년 첫 모집』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7년 11월 1일자 2면, 아시아경제닷컴 11월 1일자 정치면)

- 내 용

한국여군의 시초는 정부 수립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조직된 중등학교 이상 학도호국단의 교련교사로 양성된 여자배속장교다. 1949년 여자청년호국대지도자로 양성된 여자배속장교는 32명이었다. 당시 훈련을 담당한 훈련대장 김현숙 초대 병과장은 학도호국단이 폐지된 후 신성모 전 국방장관실에 배치돼 지리산 등지의 공비토벌작전 중 생포된 여자공비의 전향 임무를 수행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김현숙 병과장은 여자배속장교 출신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자의용군 모집을 건의해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됐다. 당시 지원 자격은 18세~25세의 미혼여성으로 중학교(당시 6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였는데, 3000명의 지원자 중 500명이 제1기생으로 선발됐다. 제1기생 대부분은 학교 교사이거나 중학교 졸업자,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 당시는 엘리트 여성들이 주축이었다. 교육대는 이후 여자의용군훈련소로 개칭됐다.

그러나 여자의용군훈련소는 그 설립목적이 교육훈련기관이었기 때문에 배출된 대한 인사관리·활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여자의용군 제2기 배출 이후 훈련소에 대한 별다른 활용방안도 없었다. 1951년 11월 15일 여자의용군훈련소를 해체하고, 육군본부 고급부관실(부관감실)에 여군과를 설치했다. 이어 군에 잔류해 각 국감실과 부대에 배속된 여자의용군(이후 여군)에 대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 수행토록 했다.

여군병사를 처음모집한 것은 이때부터다. 군은 타자 기술이 도입되면서 여군 주특기 확보 차원에서 1953년부터 여군병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준은 만 17~24세의 중학교 이상 졸업여성으로 전화교환병, 타자병 등 비전투분야에 활용됐다. 당시 여군병의 복무기간은 징집병으로 근무하는 남군병사와 같이 38개월이었다.

여군병사가 늘어나면서 남군과 동일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등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양성기관도 생겨났다. 1955년 7월 교육총감부 예측으로 서울 서빙고에서 만들어진 여군훈련소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1974년에 폐지된 여군병사 모집대신 현재 군은 부사관과 장교 등 여군간부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군에 복무중인 여군은 장교 4590여명, 부사관 5500여명이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대부분은 내전이 잦은 국가들이며 일부 국가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실행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 징집에 나서는 건 양성 평등 차원에서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2016년 7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나토의 일원인 노르웨이는 전쟁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남성도 학업이나 건강,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사유로 어렵지 않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징병제가 도입된 것이다. 노르웨이 여군병사는 남군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를 한다.

스웨덴은 내년부터 여성징병제를 실시한다. 징집 대상은 18세 청년으로, 9~12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스웨덴 정부는 “현대의 징집제도는 젠더(성별)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남녀 의무 징병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시아경제 1면 3단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아시아경제 홈페이지(<http://www.asiae.co.kr>)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정정보도 내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기사를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및 포털(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기사에서 삭제하도록 하며, 해당 기사를 복제하여 게시된 각종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기사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여군 병사 모집제도 43년 만에 부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2. 본문 : 아시아경제에서는 지난 11월 1일 뉴스에서 “여군 병사 모집제도 43년 만에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국방부는 현역병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43년 만에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혼선과 국방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시아경제> 종합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21개월 복무...장교지원도 가능”과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아시아경제닷컴(<http://www.asiae.co.kr/news/>)>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별지 1]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기재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나.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6.

[별지] 결정 보도문

- 가. 제목 :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지는 2017년 11월 1일자 종합면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현역병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국방부는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계획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7년 12월 1일자 종합면, 아시아경제닷컴 2017년 12월 1일자 정치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참조>

## 사례. 5

신청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2017서울조정358, 2017서울조정359(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MBN), 주식회사 매경닷컴(인터넷 MBN)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7. 2. 21.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난 2012년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져 총선에서 낙선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막말을 하거나 그로 인한 논란 때문에 낙선했던 것이 아니라며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은 담당 기자가 다른 방송인의 막말 파동과 착각한 점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전하였으며, 중재부에서는 악의나 고의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배상액을 협의해볼 것을 당사자에게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5,000,000원과 함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원만히 화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입당하자마자 제명』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2월 18일자 ‘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2월 18일자 뉴스면)

## ■ 내 용

- ▷ 앵커 : 인터넷 팟캐스트 ‘○○ ○○○’ 진행자로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격의 선봉에 섰던 김○○ 씨가 자유한국당 대선주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후보들이 난립하는 한국당을 비꼬는 행보로 풀이 되는데, 한국당이 곧바로 제명하고 나섰습니다.
- ▷ 기자 :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낙선한 김○○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 때마다 자신의 막말 이력을 들춰내는 방송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입당했다고 비꼬았습니다.  
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 한국당은 입당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제명했습니다.
- ▷ 정준길/자유한국당 대변인 : “경기도당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탈당할 수 있도록 제명 조치를…”  
입당 후 본인 SNS에 당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당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고, 당의 약칭을 ‘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당’으로 칭하며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제명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씨는 “입당이 장난이냐”며 “제명 결정 취소와 당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씨를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5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김○○ ‘위안부 막말’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2월 18일 <MBN 뉴스8> 프로그램에서 「입당하자마자 제명」이라는 제목으로 ‘김○○ 씨가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낙선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 씨는 위안부 막말을 한 바가 전혀 없어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1.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2017. 3. 26.(일)까지 제1항의 보도문을 <MBN>에서 저녁 19:30에 시작하는 <MBN 뉴스8>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블루스크린 화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표시하고, 뉴스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제1항의 보도문을 낭독한다.
3. 피신청인 2.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2017. 3. 26.(일) 23:00부터 <인터넷 MBN> 홈페이지 (<http://mbn.mk.co.kr/>) <MBN 뉴스8 다시보기> 섹션에 제2항에 따라 보도된 방송내용을 다시보기 VOD로 게시한다.
4. 피신청인들은 제2항, 제3항과 같이 보도문을 게재한 이후,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즉시 전송한다.
5.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계좌로 2017. 3. 24.(금) 18:00까지 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및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03. 17.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김○○ ‘위안부 막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3월 25일자 ‘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3월 25일자 ‘뉴스8 다시보기’ 섹션)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6

신청인이 대부받은 국유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7경남조정7·8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고성미래신문사(인터넷 고성미래신문)
중 재 부	경남중재부
접 수 일	2017. 5. 2.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부계약한 국유 농지를 인·허가 없이 불법 전용, 아스콘 포장하여 개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훼손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가 된 토지 부분은 계약 당시부터 농지가 아닌 대지였으며, 이미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있던 부분을 군청에서 인근 도로를 확장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실시한 것인데 마치 불법으로 전용한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신청인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하고, 국유지 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담아 정정보도하기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돼』 제하의 기사 (인터넷 고성미래신문 2017년 3월 31일자 사회면)

## ■ 내 용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아스콘 포장을 하고 개인 주차장 및 주택 출입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유지인 이곳은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용,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면 ○○리 ○○-○번지(답)는 국유재산으로 마을 주민에게 대부계약 되어 있다. 총 916㎡ 면적 중 약 700㎡는 A씨가, 약 200㎡는 B씨가 각각 대부한 것으로,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B씨는 이곳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개인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농지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농지를 개발할 경우 인.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유재산(전.답)을 대부할 경우 경작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계약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 사용은 이와 다르게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명확한 대부계약을 했다. 그런데 주택 앞 군도가 확장되면서 주택이 도로보다 낮아지고 출입로도 협소해 아스콘 포장을 한 것이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고성군 농지부서도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불법전용으로 드러났다.

B씨가 편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자의 말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경작을 목적으로 한 국가소유 토지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 된다”면서 “정확하게 파악 후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도 “해당 토지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 만약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시켰다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현장 확인 후 불법일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것이다. 그럼에도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절차가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홈페이지 첫화면 오피니언 오른쪽 뉴스공간 및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 2번째 문단을 168시간(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168시간(7일)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31일자 사회면에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라는 제목으로 국유지 대부자(B씨)가 불법을 자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신문은 분명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B씨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보도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도로포장은 고성군에서 진행된 것으로 B씨는 책임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 관련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3. 31.자 사회면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 제목의 기사에서 국유지인 ○○면 ○○리 ○○-○번지(답) 가운데 200㎡를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B씨가 이곳에 아스콘 포장을 해 개인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농지를 훼손했고, 농지를 개발할 경우 인·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씨는 2012년 2월 국유지 200㎡를 경작 100㎡, 대지 100㎡로 구분해 대부계약 체결하였고, 현재 아스콘 포장된 곳은 B씨가 거주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멘트로 포장된 상태였는데 2015년 고성군이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할 당시 B씨의 민원 요구에 따라 아스콘 포장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B씨는 “고성군이 농지를 대지로 사용하도록 대부계약을 해 준 것이 문제이므로 해당 부지를 지적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 5. 23.까지 제1항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뉴스웹사이트(www.gofnews.com)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사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여 함께 표시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5. 16.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정정보도]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 관련』 제하의 기사 (인터넷 고성미래신문 2017년 5월 22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제 2 장

# 반론보도 게재 사례

## 제 2 장

## 반론보도 게재 사례

### 사례. 7

보건복지부가 희귀 난치질환자를 위해 마련한 첨단재생의료법안이 대형병원만을 위한 특혜법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7서울조정1·2, 2017서울조정3·4(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보건복지부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 인터넷 서울경제)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7. 1. 3.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희귀 난치질환자를 위해 마련한 첨단재생의료법안이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만든 사실상의 맞춤형 특혜법안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첨단재생의료법안은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법안이 아니고 희귀·난치질환자 등을 위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만든 법안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대상은 대형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기사 내용이 전반적으로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론보도를 양 당사자에게 권유하였고,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 한다며... '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 제하의 기사(서울경제 2016년 12월 15일자 8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6년 12월 14일자 산업면)

## ■ 내 용

정부가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의 ‘맞춤형 특혜 법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차병원은 민간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정부 업무보고를 유치하고 숙원사업이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승인받는 등 현 정권에서 눈에 띄는 혜택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정법이 두 건 발의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올 6월과 11월 발의했지만 모두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요청한 사안으로 사실상 정부 입법이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재생의료법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재생의료법은 △병·의원들이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줄기세포 기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일정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병원이 줄기세포 치료를 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허가하도록 한다는 것 등 두 가지가 골자다. 이 중 후자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치료제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10년 넘게 걸린다. 줄기세포 치료도 환자의 세포를 별다른 조작 없이 투여하는 경우 외에 배양 등 조작 과정이 들어가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이번 재생의료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줄기세포 치료까지 정식 허가 절차 없이 전문가 심의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 법안이 발의되자 줄기세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줄기세포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법안 검토서에서 △환자 투여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검증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정상적 경로로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업체들의 의지를 꺾어 산업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줄기세포 전문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은 재생의료법이 ‘대형병원만 배 불리는 법’이라고 우려하지만 청와대 추진 법안이라는 얘기가 많아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재생의료법에는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승희 의원 발의안에는 ‘재생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절성을 심의한다’고 돼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재생의료법은 현재 편법으로 이뤄지는 줄기세포 기술을 합법화하겠다는 얘기이자 그 기술에 대해 환자에게 돈까지 받겠다는 악법”이라며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줄기세포 치료에서 환자라도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이 많은 대형병원들만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기업·중소병원 등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3~4개 대학병원에서는 재생의료법의 ‘병원 내 신속적용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정부는 의원실을 통해 법안 제정을 밀어붙였다. 복지부는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선진국에서도 정식 허가 절차 없이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재생의료법은 식약처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이 학술적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다. 연구자 주도 임상이 현재 상업용 임상과 같은 엄격한 조건으로 운영돼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의 경우 ‘병원면제 제도(hospital exemption)’를 통해 일부 재생의료 치료에 대해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있지만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국의 관할 관청’이다. 전문가 위원회라는 ‘민간’이 치료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 재생의료법과 차원이 다르다.

또 연구자 주도 임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구 임상 제도를 개선하면 될 문제를 별도의 허가 트랙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재생의료법은 대형병원 전반에 유리한 법안이지만 줄기세포 연구에서 가장 앞선 차병원의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차병원의 여러 특혜 의혹을 국회 등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최초로 발행하는 <서울경제> 제1면 좌측 상단에 아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12월 15일자 종합 8면,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한다며... '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5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서울경제>의 홈페이지(<http://www.sedaily.com>)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2]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 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기재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목** : 12월 15일자 종합 8면,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한다며... '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2. **본문** : 본 신문은 금년 12월 15일자 종합 8면,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한다며... '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특혜법안'을 만들어 추진해왔고 전문가 심의만 거치면 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의료가 유통되고 대학병원만 손쉬운 치료제 허가절차가 생긴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서울경제신문은 금년 12월 15일자 종합 8면,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한다며... '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특혜법안'을 만들어 추진해왔고 전문가 심의만 거치면 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의료가 유통되고 대학병원만 손쉬운 치료제 허가절차가 생긴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첨단재생의료법은 희귀 난치 질환자와 같은 다른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 야 의원실에서 발의된 법률로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법안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므로 본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안에 포함된 첨단재생의료실시의 심의 및 승인 절차는 희귀 난치 질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연구를 승인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원하는 경우 누구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대상은 대학병원 또는 대형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임상연구 실시계획의 승인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에서 과학적 유효성,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임상연구를 거친 세포 치료제 등을 일반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의약품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가 유통되거나 대학병원만 손쉬운 허가절차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만 유리한 특혜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첨단재생의료법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보는 2016년 12월 15일자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 한다며...‘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특혜법안’을 추진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차병원 등 대형병원 특혜법률이 아니며 희귀·난치 질환자 등을 위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 신청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연구를 승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 1. 31.(화)까지(단,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서울경제> 종합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보도문 제목 위에 실선을 그어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국회 발의 ‘재생의료법’ 2건 사실상 정부 입법)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2017. 1. 20.)부터 2017. 1. 31.(화) 18:00까지의 기간 중(단,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48시간 동안 <인터넷 서울경제> 홈페이지 (<http://www.sedaily.com/>) <산업> 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는 DB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이어 게재한다.
4. 피신청인은 제2항, 제3항과 같이 보도문을 게재한 이후,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고,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이 이어 게재되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5.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 20.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첨단재생의료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월 25일자 8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월 24일 산업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8

신청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가 고객과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정당한 환불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7광주조정4·5, 2017광주조정6·7(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전○○
피신청인	주식회사 광주방송(KBC-TV, 인터넷 KBC)
중 재 부	광주중재부
접 수 일	2017. 2. 6.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특정 결혼정보업체가 연회비로 수백만원을 받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 계약 당시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는 제보를 토대로, 결혼정보업체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환불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안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분쟁을 종결할 것을 양 측에 권유하였고,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연회비만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 (KBC-TV 2017년 12월 23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KBC 2017년 12월 23일자 사회면)

## ■ 내 용

▷ 앵커 :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비를 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체가 약속한 말만 믿고 계약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 기자 :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 6월, 4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광주의 한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두 차례 여성을 소개받았던 이 씨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 모 씨 / 결혼정보업체 피해자 : “(여성 소개를) 계속 시켜주는 걸 얘기했었어요. 계약서 상으로 2회라는 걸 저는 보질 못했어요 매니저가 해주라고 하는 대로 그냥 적기만 했을 뿐이지 솔직히 (385만 원에 2번 소개 계약을) 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 업체관계자 :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주고 사인을 받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꾸 무엇이든지 들어놓고 안 들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결혼정보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 사례는 광주\*전남 4백 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천 건에 이릅니다. 특히 공정위 약관에 따르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건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계약 불완전 이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조○○ / 한국소비자보호원 호남지원 조정관 : “계약서상의 내용에 구두상 약조 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모두 기재하셔야 되고 또한 환불 규정과 같이 약관을 잘 꼼꼼히 확인하셔서 계약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9백여 개 넘게 난립한 결혼정보업체들의 과당경쟁이 허위 과장 광고와 배짱 영업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정정보도문을 KBC 광주방송 <KBC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또한 각 포털사이트 뉴스도 삭제토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KBC(www.ikbc.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각 포털사이트 뉴스도 삭제토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결혼정보업체 피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6년 12월 23일 KBC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연회비만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 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업체가 소비자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하고 환불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소비자의 제보는 허위된 것으로 특정업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연회비만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 반론보도

나. 본문 : 지난 해 12월 23일 <연회비만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정보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객에게 주선 횡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고객에게 주선횡수 등 계약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필로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 2. 28.까지 KBC-TV <저녁뉴스> 프로그램에 제1항의 보도문을 1회 방송하되, 제목은 방송화면 하단부에 자막으로 게시하고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기사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은 KBC-TV 홈페이지(<http://www.ikbc-tv.co.kr>) <8시뉴스>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에도 제1항의 보도문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3항의 사항을 전송한다.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종합유선방송(CATV)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VOD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3항의 사항을 전송한다.
6.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성실히 완료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각 조정대상방송을 보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2. 23.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연회비만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KBC-TV 2017년 2월 24일자 ‘저녁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KBC 2017년 2월 24일자 저녁뉴스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9

항공회사 조종사 복수노조 중 하나인 신청인 노조가 사측에 우호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482·483·484 정정·반론·손배청구
<b>신 청 인</b>	○○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
<b>피신청인</b>	한겨레신문 주식회사(한겨레21)
<b>중 재 부</b>	서울제7중재부
<b>접 수 일</b>	2017. 3. 14.
<b>처리결과</b>	조정성립(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만화를 통해 ○○항공 조종사 복수노조 중 하나인 신청인 노조가 사측 의견을 옹호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뿐이며, 해당 보도로 인해 노조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및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해당 기사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정보도 보다는 반론보도를 권유하였고, 반론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게재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그들만의 하늘 ①, ②』 제하의 기사 (한겨레 21 ‘모두가 래퍼’ 코너 2017년 2월 13일자 78~79면, 2017년 2월 20일자 78~79면)



- 내 직업은 항공사 부기장이야.
- 다들 이렇게 생각할거야. 여러 나라를 좋아하는 비행기로 조종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 국제선은 대부분 저녁 출발, 새벽 도착이라 항상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비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피로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해.
- 한 달의 절반 이상 외박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 사이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 비행 전날 준비는 필수야. 목적지의 공항 절차 차트, 통신 절차 연구
- 이륙 최소 2시간 전까지 브리핑실 도착해 서류 확인 및 준비
- 브리핑 뒤 항공기로 이동해 이륙 준비. 공항 도착 뒤 호텔에서 먹을 비상식량 준비 (저녁에 음식 구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짧아서 대부분 휴식과 수면 뒤 다시 비행하러 이동
- 귀국하면 시차 적응이 어려워. 도착 당일은 멍한 상태로 다음 비행일정까지 대부분 집에서 휴식.
-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 매년 항공 종사자 신체검사1급(가장 복잡하고 엄격한 신체 검사)을 1~2회 취득. 항공조종사 영어시험은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격 획득
- 수준 높은 복합기술이 필요하며 공부와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이야.
-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노동여건 때문에 추락 및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켜서 오래 전에 파업한 적이 있었어.
- 외국 항공안전 컨설팅으로 안전의식에 큰 변화가 있었지. 이것을 계기로 처음 노조가 회사와 협상해 근무시간 기준 및 제한, 각종 초과수당과 복지 기틀을 마련했어.
- 그런데 얼마 안 돼 회사는 출신에 따른 조합원의 자존심을 이용해 노조 분열에 성공했지.
-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고 그나마 협상 결렬로 장기간 거의 인상되지 않았어. 회사는 항공사업 독점으로 많은 이득을 챙겨왔지.

- 재벌 독점경영과 비정상적인 주주행사권으로 수많은 법인과 자회사를 만들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
- 해마다 적자를 내세워 임금인상을 거부하면서 임원 연봉은 획기적으로 올리지.
- 해외 체류 호텔은 재계약할 때마다 월가절감을 핑계로 모텔급으로 변경했어. 문제는 해외 체류시 관광이 아닌 시차적응 및 컨디션관리를 위한 근무의 연장선임을 부정하고 보안과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저가 숙소로 하향시키고 있다는 점이야.
- 해외 체류시 머무는 저가호텔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야. 침대에서 벌레한테 물려서 치료받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보다 더 심각한건...
- 저가 호텔에 가끔 치안 문제가 일어나 승무원이 성희롱을 당하거나 외출 중 도난사건이 발생하기도 해.
- 회사 쪽은 적자를 주장하며 많은 조종사들이 저가항공사와 중국 항공사로 이직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 조종사들에게 근거도 없이 산출한 교통비의 상환을 요구하지.
- 대부분의 항공사는 교육상환비가 아예 없거나 몇 년 안에 소멸되지만, 이 회사는 교육과 항공기 전환 등에 대한 동의서 없이 인사조치를 해서 이직하면 교육비를 내놓으라고 압력을 행사했어.
- 민간 항공기는 기장과 부기장으로 조종사가 구성되는데 부기장이 기장이 되기까지 저가항공사는 통상 5년이 걸리지만, 특정 항공사는 11~12년이 걸리고 조종사가 부족한데도 외국인 기장을 채용함으로써 부기장의 기장 승급이 지연되고 있어.
- 하지만 외국인 조종사들도 연봉(국내 조종사의 2배 이상)과 복지에 불만을 느끼고 다시 외국으로 많이 이직하고 있지.
- 민간항공기 출신 조종사는 최소 1억 원대 비용과 2년 이상 기간을 투자해 국가 자격증을 딴 뒤 항공사에 취직하고, 군 전역 조종사는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고 국가자격증을 획득해야 항공사에 취직할 수 있어.

- 매년 2회 구술 및 시뮬레이터 평가, 연 1회 비행평가를 해. 실제 비행시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상황을 자동기록하는 장치로 인해
- 엄격한 기준을 벗어나서 비행하면 회사에 불려간다는 압박감이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 인적 요인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인명피해나 항공기 손상이 아님)가 발생하면 회사의 자의적 기준으로 면직 및 감봉. 장시간 무급비행이나 중지 등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게 현실이야.
- 그래서 이직하는 조종사가 늘어나니까 조종사 수급에 위기를 느낀 회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외국인 조종사로 충원하고
- 같이 비행하는 한국 조정사들은 그들의 실력을 경험하고 불안함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어.
- 수많은 협상에서 실패를 거듭한 노조는 회사 오너가의 비상식적 행태를 버텨오다, 적자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수십 대의 비행기 구매계약을 하고 파격적으로 임원 월급을 올리는 것에 분노하며 그에 비등하는 조종사 노동자의 급여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어.
- 하지만 회사 쪽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계속 제시하지.
- 특정 항공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노조가 분리되어 있고 그중 한 노조가 회사 쪽에 우호적이기 때문이지.
- 한쪽 노조가 상생을 내세우며 회사쪽 의견을 옹호하니 회사와 노조의 임금 및 처우개선 협상에서 두 노조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갈등해.
- 노무현 정부 시절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하더라도 최소 80% 이상 항공기 운항을 해야하는 규제 때문에 파업효과가 다소 미비한 것을 알고 있어.
- 오히려 회사는 노조 파업을 빌미로 적자·비인기 노선을 없애려 해.
- 회사의 비상식적인 조종사 대우, 업무과정에서 오는 긴장감과 소통의 부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 스트레스와 피곤함으로 인한 무기력함...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이 좀 힘드네.
- 비행을 좋아해서 이 직업을 택했고 운이 좋아 전투기와 민간항공기를 타며
- 처음 가는 나라로 비행할 때의 설렘이 소소한 활력소지만
-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가족에서 해답을 찾아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아야지.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한겨레21 ‘모두가 래퍼’ 라는 만화형식의 기사면에 [별지 1]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래퍼”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그들만의 하늘”의 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한겨레21 ‘모두가 래퍼’ 라는 만화형식의 기사면에 [별지 2]의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래퍼”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그들만의 하늘”의 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모두가 래퍼 21화 그들만의 하늘’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잡지는 지난 2017년 2월 13일과 2월 20일에 걸쳐 ‘모두가 래퍼’라는 만화형식의 기사란에 ‘그들만의 하늘’ 이라는 제목으로 ○○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이 ○○항공의 타 조종사노동조합과는 달리 ○○항공 사측에게 전적으로 아부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노조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했을 뿐 ○○항공 사측과 비밀리에 협의하여 사측에 유리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제목 : ‘모두가 래퍼 21화 그들만의 하늘’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 잡지는 지난 2017년 2월 13일과 2월 20일에 걸쳐 ‘모두가 래퍼’라는 만화형식의 기사란에 ‘그들만의 하늘’ 이라는 제목으로 ○○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이 ○○항공의 타 조종사노동조합과는 달리 ○○항공 사측에게 전적으로 아부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에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률에 보장된 ○○항공 조종사의 복수노조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한 것으로서 이 기사로 인하여 ○○항공 내 ‘노-노갈등’이 유발되고 해당 노조의 노조원들이 지인들로부터 ‘어용노조’에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노조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업무에 극심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 가. 제목 : ○○항공조종사새노조 관련 반론보도문
-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2월 13일과 2월 20일자 ‘모두가 래퍼’ 라는 만화 코너에 “그들만의 하늘” 이라는 제목으로 ○○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이 ○○항공의 타

조종사노동조합과는 달리 회사 쪽 의견을 옹호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노조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했을 뿐, ○○항공 사측과 비밀리에 협의하여 사측에 유리한 행동을 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본지 만화의 일부 왜곡된 묘사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노조원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가. <한겨레21> 70~80면 사이에 제1항의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21>의 통상적인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나. <한겨레21>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카툰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며 (게재 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

다.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 3. 피신청인은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4. 12.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항공조종사새노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4월 24일자 62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10

집 주인인 신청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b>사 건</b>	2017제주조정8·9 반론·손배청구
<b>신 청 인</b>	김○○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제주도민일보방송(제주도민일보)
<b>중 재 부</b>	제주중재부
<b>접 수 일</b>	2017. 5. 23.
<b>처리결과</b>	조정성립(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임대인인 신청인이 이주민인 세입자와 10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땅을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등 땅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임차인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며, 사인 간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다수 인용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며 반론보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법원의 조정과정 중 신청인이 고함을 쳤다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위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정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의 형식으로 신고 피신청인이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땅이 뭐길래...”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제하의 기사 (제주도민일보 2017년 5월 15일자 사회면)

## ■ 내 용

서귀포시 ○○읍 한 ○○학교에 근무중인 교감선생님이 땅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이들을 씩씩하게 하고 있다.

특히 나름대로 소송을 벌일만한 명분을 갖고 있겠지만,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제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제주도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읍 한 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학교 교감선생인 김모씨는 빌려준 집에 달린 사용하지 않는 감귤 창고를 이웃집에 허락없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세입자 조모씨 부부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야기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지난 2011년 암 투병중인 부인과 함께 제주로 내려왔다.

제주로 온 조씨는 서귀포 시내에 거주하다가 보다 쾌적한 공간을 알아보던 중 2013년 한 농가주택을 찾아 그 집주인인 교사 김씨와 계약을 했다. 연세 250만원이었다.

조씨는 집을 가꾸기로 마음먹고 정성을 들였다. 집주인이 참 좋은 분이라고 조씨는 기억했다. 조씨는 “계약 당시 집주인 김씨는 ‘○○리에 아픈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 10년 동안 살면서 집만 잘 가꿔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집주인 김씨의 말을 듣고 10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2015년 일이 터졌다.

조씨는 “2015년 어느날 집주인인 교사가 창고에 보관해둔 부군의 유품과 골프채 등이 없어졌다고 트집을 잡더라. 2013년 당시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뭘지도 모를 짐과 사과 껌이 쌓여져 있던 창고였다”며 “근데 두 달 후에 소장이 날아오더라. 뭔가 하여 열어봤더니 교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조씨는 “소장을 접해보지 않았던 터라 불안하고 불쾌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이 교편을 잡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비상식적인 교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땅값이 오르니까 본인 소유의 땅을 매각하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집수리비와 변호사 선임 등에 2500만원을 썼다. 돈도 돈이지만, 세입자에게 본인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텐데 정상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소장부터 보내는게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이 교편을 잡았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조씨는 “이런 일이 생겨 가슴이 아프다.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 되던 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그러나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주를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 것인가. 참 씩씩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교사인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조씨 부부를 상대로 ‘주택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김씨가 낸 소장엔 따르면 “조씨 부부에게 빌려준 주택을 다시 돌려주고 2016년 3월 31일부터 땅과 주택을 되돌려주는 날까지 매월 20만8333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 달라”며 “피고 조씨는 원고에게 1050만8600원 및 이에 대해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집주인인 김씨가 보낸 소장엔 따르면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해당 주택과 창고 등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2005년 남편이 사망하고 난 뒤 현재까지 교사인 김씨 명의로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후 김씨는 2013년 3월30일 조씨 부부와 2023년 3월30일까지 10년간 임대기로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김씨와 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한 집에 붙어 있던 창고였다.

김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대지상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미등기 창고도 있는데, 그 창고의 한켠에는 원고가 남편의 유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세입자 조씨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조심스럽게 보관해야지 창고에 방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하고 있다.

집주인인 김씨는 또 “원고는 대지와 지상 주택 등을 피고들보다 앞선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때에는 물론이고 피고인들이 임대할 때에도 창고의 한켠에 보관중인 남편의 유품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창고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시키는 데에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씨는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집주인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는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어 “피고인들은 원고 몰래 사용료 200만원을 받고 이 창고를 다른 이웃 주민 김모씨에게 사용하도록 해 버렸다”며 “(때문에 창고를 전대받은) 이웃주민 김씨는 창고내에 보관돼 있던 원고 남편의 유품들을 창고 밖으로 꺼내어 방치하고, 심지어 창고의 내부 구조까지 마음대로 변경해 버렸는 바, 이는 피고들이 명백하게 임대차 계약상의 전대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이웃주민에게서 창고 사용료를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애초에 집주인과 계약 당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창고를 조씨로부터 빌린 김씨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들은 이미 신뢰 관계가 깨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했다.

세입자 조씨는 “최근 당사자 조정을 위해 법원에서 집주인인 김씨를 만났는데 고함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며 “이런 분이 교육자로 있다는 게 참으로 씁쓸하다”고 기억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 모습. 세입자 조씨는 왼쪽 파란색 문 안쪽으로 집주인 김씨의 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 김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도 김씨의 돌변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창고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웃 주민 김씨는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웃주민 김씨는 암 투병중이다.

이웃주민 김씨가 교사 김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발신인은 김OO님과 30년 가까이 친 자매처럼 살아온 관계였으나, 최근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사활을 걸고 투병중인 본인(이웃주민 김씨)에 대한 핍박과 지속적인 소송제기 등으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김씨는 “수신인(집주인 김OO)께서는 과연 미래를 책임지는 꿈나무들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교육공무원인 교감’으로써 자질이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적어나갔다. 이웃주민 김씨는 “30년전부터 잘 아시다시피 수신인(집주인 김OO) 소유의 ○○읍 OO리 0000번지 내 불법건축물인 창고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신인(집주인 김OO) 승낙을 득하고 2011년 전부터 본인이 일부 개조해 사용해 오다가 수신인께서 소를 제기, 법원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원상복구를 한 바 있다”며 “창고 사용을 허락했던 주된 이유가 33제곱미터 땅이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승락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은 1987년부터 무단점유 대지 반환 요구를 수십 회에 걸쳐 직접 요구했고 급기야 2010, 2013, 2016년경에는 지적측량을 통해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채 ‘법으로 찾아가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주민 김씨는 또 “이에 따라 본인은 2017년 5월말까지 해당 본인 유인 대지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1987년 1월부터 2017년 5월3일까지 약 360개월간 무단 사용해 이익을 취했던 1000만원 상당의 배상 또한 요구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정산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웃주민 김씨는 이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귀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며 “만일 거부할 경우 제주교육청에 민원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랫집에 사는 이웃주민 김씨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내 땅에 창고건물을 지어놓고 지금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이제는 창고를 부숩달라고 요구하며 법적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갑질 행태가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집주인 김씨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세 250만원 받고 서귀포시에 있는 또다른 집을 빌려 연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인의 처지를 설명하고는 “이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기사화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인터넷 제주도민일보(www.jejudomin.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며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제목** : “땅이 뭐길래...”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관련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 인터넷 제주도민일보는 지난 2017년 5월 15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땅이 뭐길래...”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이라는 제목으로 세입자 이모씨 부부와 아랫집 김모씨 인터뷰와 제공자료를 근거로 ○○읍 ○○ 교감 김모씨가 땅값이 오르자 10년 계약한 세입자를 3년 만에 쫓아내려 하며 비상식적인 교사, 미래를 책임지는 꿈나무들을 이끌어 가야할 막중한 교육공무원인 교감으로서 자질이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협박 피해 당사자인 ○○읍 ○○ 교감 김모씨는 본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이유를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집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부동산에게 팔아달라고 하거나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개인소송 문제를 한쪽의 주장만을 대다수 인용하여 소송 내용을 왜곡되게 기사화함으로써 이는 판결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 15일자 「“땅이 뭐길래...”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제목의 기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땅을 매각하기 위해 모 교감선생님이 10년 계약한 이주민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과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감선생님은 임차인의 욕설과 협박으로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임차인이 창고를 무단으로 전대하고 동의 없이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소송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땅을 매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법원의 조정과정 중 고함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교감선생님은 이웃주민이 본인의 창고에 있는 짐을 불태우고 버렸으며, 창고를 방으로 개조하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여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보도로 본의 아니게 교감선생님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제주도민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단 이상 및 뉴스>사회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며(게재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

초기화면에는 게재 후 24시간 동안 유지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6. 8.

---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제주도민일보 2017년 6월 9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11

신청인 아파트가 경비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고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게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1683, 2017서울조정1684(병합) 각 정정청구
<b>신 청 인</b>	○○○○○ 입주자대표회의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와이티엔(YTN), (주)와이티엔플러스(인터넷 YTN)
<b>중 재 부</b>	서울제7중재부
<b>접 수 일</b>	2017. 9. 11.
<b>처리결과</b>	각 조정성립(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한 경비원을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경비원들에게 화장실에서 숙식을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경비실 책상, 휴게실 등을 숙식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인사발령은 해당 경비원의 근태불량에 따른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원 보도에 반론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비원들에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별도 공간이 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단독] “교도소 독방만도 못해요”...화장실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8월 24일자 ‘이슈오늘’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 ■ 내 용

▷ 앵커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이 발도 뺨을 수 없는 좁은 경비실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재래식 화장실에서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의하자,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 기자 : 예순을 훌쩍 넘긴 경비원 김 씨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서둘러 식사를 해결합니다. 앉을 곳이 마땅히 없다 보니 그대로 서서 끼니를 때우는 겁니다. 워낙 공간이 비좁은 데다 역한 화장실 냄새 탓에 밥 먹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 김 모 씨/ 경비원 : 냄새가 올라오는데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소변보고, 밥 해먹고, 잠자고. 이거야말로 현대판 노예죠.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경비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다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어 야간에 잠시 휴식이라도 취하려면 머리맡에 변기를 두고 누워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인 남성이 팔도 채 다 펴지 못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김 씨가 일하는 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은 서울 강남의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단지 자체가 낡아 사실 경비실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일한 김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관리사무소 측은 제한절을 앞두고 아파트에 태극기를 달라고 지시한 뒤 업무 처리가 늦었다며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되레 모욕적인 말이 돌아왔습니다.

▷ 김 모 씨/ 경비원 : 나이 먹어서 노망들었다고 모욕하고…. 업무 지시인데 거역하느냐고. 거기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죠.

이후 김 씨가 인권위와 청와대에 진정을 넣자,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는 김 씨를 출근만 두 시간이 걸리는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로 인사 이동시키고는

지각이 잦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 했습니다. 아파트와 용역 업체 측은 김 씨가 분란을 조성하고 업무에 지장을 끼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묵묵히 견뎌왔던 고령의 경비원들은 부당한 처우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1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YTN-TV <YTN24, 이슈오늘, 뉴스타워, 이슈N이슈, 뉴스Q, 뉴스 나이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YTN-TV 홈페이지(<http://www.ytn.co.kr/>)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교도소 독방만도 못해요”...화장실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24일자 “교도소 독방만도 못해요”...화장실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보도내용 중 “화장실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항의로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화장실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비원들은 없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항의로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화장실에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2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이 숙식을 화장실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의하는 경비원을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강요한 바는 없으며, 지하 1층의 개인공간 및 공용 휴게실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가. YTN <뉴스 나이트> 프로그램에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방송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나. YTN 홈페이지 뉴스>사회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며(게재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조정대상기사(5개) 및 2017. 8. 24.자 <뉴스Q> 프로그램에 보도된 관련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0. 2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화장실에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10월 28일자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12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7서울조정2130, 2017서울조정2131(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인터넷 연합뉴스TV)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7. 11. 29.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가 환경부 공인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했지만 사용 금지 원료가 검출되어 4개월 만에 취소되었고, 신청인 업체는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바 없고, 인증취소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라고 단정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해당 물질의 검출 경위와 친환경 인증 취소 사유,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진행 사실을 반영하여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친환경 제품이라더니…유아 매트서 유해 물질 검출』 제하의 보도 (2017년 11월 20일자 연합뉴스TV 'NEWS 20'프로그램, 2017년 11월 20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산업면)

## ■ 내 용

▷ 앵커 : 내 아이가 쓰는 물건이라면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물건 쓰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하던 유아용 매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친환경 인증만 믿고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큼니다.

▷ 기자 : 아이를 키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프리미엄 유아용 매트입니다. 올해 7월 업계 최초로 환경부 공인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했지만 지난 15일 인증 4개월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트 라인에서 환경부가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모르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 트립니다.

▷ 김 모씨/ 피해자 : “화학적인 제품을 썼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니깐 당황스럽고… 대응이나 조치는 전혀 없고 자기들도 취소를 당하게 돼서 억울하다 (사과문에) 그런 내용만 있으니깐 화도 많이 나고요.”

업체 측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 라인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일부 혼입된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 청소용제로 사용되었더라도 상당량의 잔여물이 남아 다음 공정에 혼입된 것은 관리 부실로 인한 제품 구성의 원료 사용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 환경부 관계자 : “청소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다면 소량만 나오는데 100ppm이 초과됐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취소한 겁니다.”

비싼 돈을 주고도 안전한 친환경 제품을 사줬다고 뿌듯했던 부모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연합뉴스 TV NEWS 20(8시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하되, 멘트가 진행 되는 동안 정정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연합뉴스TV의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논란의 소지가 분명한 검증 기준으로 취소된 친환경 인증 피해를 업체로 전가’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20일 8시 NEWS 20 프로그램에서 “친환경 제품이라더니 ... 유아 매트서 유해 물질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특정 유아 매트 제작 업체의 모든 제품이 원천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도 했으며, 인증을 취소 당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을 통해 대면 취재 후 인터뷰 및 보도진행을 요청했으나 환경부 담당자 인터뷰의 극히 일부 녹취 부분을 인용하여 ‘유해물질’이란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으로 보도 되어 소비자와 업체의 혼란과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전술하였듯 업체의 대면 취재를 거부했고, 관계자와 1차 1시간 59분, 2차 26분 56초 총 2시간 30여 분 간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 했으나 실제 방송 시 업체의 입장을 육성으로 전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 기술원은 해당 검출 물질은 “금지물질은 금지 물질인데 인체 유해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으며 그 기준을 만들고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라”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체는 취소 기준의 모호성과 부적합을 근거로 인증취소를 취소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 하지 않은 보도 ‘인체유해성’ 논란과 불안감을 야기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친환경 제품이라더니... 유아 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20일 8시 NEWS 20 프로그램에서 “친환경 제품이라더니... 유아 매트서 유해 물질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하던 유아용 매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유아 매트 생산업체 측은 검출된 물질은 2017년 7월 ~ 9월 초까지의 생산 공정 중 세척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친환경 인증 취소는 ‘제조 공정상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특정물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항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업체 측은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상대로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2017년 12월 27일(수)까지

가. 연합뉴스TV 「NEWS 20」 프로그램 말미에,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기사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나. 연합뉴스TV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tv.co.kr/>)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서비스에도 제1항의 보도문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2. 15.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친환경 제품이라더니...유아 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연합뉴스TV 2017년 12월 23일자 ‘뉴스20’ 프로그램, 인터넷 연합뉴스TV 2017년 12월 23일자 ‘다시보기’ 섹션)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제 3 장

#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제 3 장

##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사례. 13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신청인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 건	2017서울조정674·675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7. 4. 6.
처리결과	취하(추후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전 이사장에게 본인의 임용 관련 뇌물을 준 혐의와 이사의 친척을 채용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무혐의처분 및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추후보도 및 7,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무혐의 처분 및 무죄판결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보도하여 이를 확인한 신청인이 조정기일 이전에 사건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1

- 『울산 ○○고→△△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5년 12월 3일자 사회면)

## ■ 내 용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로부터 울산지역의 대표적 비리사학으로 낙인 찍혀온 울산 ○○고의 학교법인 전·현직 이사장과 현 교장·교감·행정실장, 재단 이사 등 6명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고가 교명을 바꿔 내년 신입생을 받기로 하자 지역계에서 “교명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 ○○고는 지난 1989년 ○○군 ○○면 ○○에 일반고로 개교했지만 주변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공해, 모기의 습격 등으로 학생들이 입학에 기피해 오랫동안 이전 요구가 강한 학교였다.

특히 지난 1999년 완공한 학교 체육관의 공사비 횡령 혐의로 전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지난 2011년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다시 학사 개입과 학교 부지 매각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6월 22일 이사회가 이아무개 전 이사장을 해임하자 전 이사장은 “교감·교장 승진 때의 금품 수수 등 현 이사진과 학교장 등이 공동비리가 있다”고 자폭성 행보를 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당사자들은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사법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아무개 전 이사장을 비롯해 교장 출신인 류아무개 현 이사장, 현직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이사 등 6명은 전 이사장의 자폭성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기피 등으로 지난 2년간 입학생을 받지 못했던 ○○고는 2016년에는 학교장 입학전형으로 일반과정 4개 학급 100명, 체육 중점과정 2개 학급 40명 등 모두 140명의 학생을 선발키로 하고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원서접수를 한다.

특히 ○○고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학교명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키로 하고 오는 3월부터 새 학교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학교재단 및 학교 구성원이 지금도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소돼 재판을 받을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이름만 바꾼다고 이미지가 쇠신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울산교육연대 최민식 상임대표는 “○○고의 근본적인 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이름만 바꾼다고 깨끗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겠나”며 “○○고 내에 자리 잡은 비리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고가 완전히 새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정대상보도2

- 『울산 ○○고 전 이사장, 현 교장·행정실장 등 기소』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6년 1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지난 십수 년간 지역에 파장을 불러온 사학, 울산 ○○고의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현 교장·행정실장과 재단이사 등 4명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고 전 이사장의 뇌물 수수 등 폭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에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현 이사장은 이번 기소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아무개 전 이사장이 지난 1989년 ○○군 ○○면 ○○에 일반고로 개교한 ○○고는 지난 1999년 완공한 학교 체육관의 공사비 횡령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 전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지난 2011년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학교 이전과 매각 등의 문제로 논란이 재현됐고, 지난 6월 22일 이사회가 이 전 이사장을 해임하자 이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과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지역 교육계에 큰 파장을 불렀다.

이 전 이사장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현 이사장을 교장으로 임용할 당시 5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받기로 한 후 500만 원과 200만 원, 200만 원 등 모두 9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현 교장 임용 때도 1200만 원을 받았고, 행정실장을 채용할 때는 300만 원, 4년간 400만 원 등 모두 7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이번에 기소된 이사의 인척을 채용하면서 행정실장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은 후 함께 나눠썼다.

이 전 이사장은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당시 언론사 취재진들에게 “나 자신은 그동안 나쁜 짓을 했지만 후배들이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학에서 더 이상 비리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현 이사장과 교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행정실장은 기자회견담회까지 열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폭로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고 사태에 대해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관련자들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울산지역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법인 ○○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한○○)는 28일 울산시교육청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들로 관선 이사를 파견해 ○○고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울산지역 사립교육기관인 학교법인 ○○학원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울산 광역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문제해결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조정대상보도3

#### ■ 『○○고 전 이사장 “뇌물 주고받았는데 왜 무혐의냐”』 제하의 기사(오마이뉴스 2016년 3월 15일자 사회면)

#### ■ 내 용

울산 ○○고의 설립자인 학교법인 ○○학원 전 이사장과 현 교장·행정실장과 전 재단이사 등 4명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 전 이사장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자수해 밝혔는데도 일부는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이사장은 또한 “감독청인 울산시교육청이 학연, 지연 등으로 안일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의 뇌물수수 등 폭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해 현 교장·행정실장, 전 이사 등 4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번 진정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현 이사장이 기소되지 않은 것 등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때 학사 개입 등으로 울산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이아무개 전 이사장이 지금은 현 이사진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 법인 이사진 등과 자신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 자신과 이들을 함께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그는 진정서에서 그 이유를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현 이사장은 교장 이사 임용조건으로 1차 5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200만 원 등 900만 원을 내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경찰에 자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교감을 임용할 당시 교감 조건으로 500만 원을, 현 교장을 교장 이상 시켜주는 등의 대가로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을 받았다”며 “하지만 검찰은 교감은 무혐의 처분, 교장의 7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500만 원 건만 약식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이어 “현 행정실장에게는 임용 당시 300만 원과, 그후 수차에 걸쳐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받았다”며 “또한 학교법인 전 이사의 조카를 교사로 임용시켜주겠다고 5000만 원을 차용증을 발급한 후 나누어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700만 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의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립 30년 전통의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수한 나의 진술을 일부 묵살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하지만 지인들의 만류와 권고로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교육계에서는 지난해 경찰 내사중인 이아무개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했던 울산시교육청이 현 이사진 일부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두 달이 가까워지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검찰에 기소된 사항과 관련해 이를 확인하고,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면서 “학연, 지연 등으로 안일한 감사를 했다는 부분은 확인된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1. 제목 : [추후보도문] “△△고(前 ○○고) 前 재단이사장 이모씨의 허위 자백 때문에 행정실장 비리 혐의 기소” 보도 관련

2. 본문 : 본지는 2015년 12월 3일 사회면 『울산 ○○고→△△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2016년 1월 28일 사회면 『울산 ○○고 전 이사장, 현 교장, 행정실장 등 기소』, 2016년 3월 15일 사회면 『○○고 전 이사장 “뇌물 주고 받았는데 왜 무혐의냐”』 제하의 각 기사에서, △△고등학교(前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행정실장이 임용 당시 ○○고등학교 前 이사장에게 700만원을 줬다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1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교사 채용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재판 결과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고등학교 前 이사장이 모씨가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자 직위에 복귀하기 위해서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허위의 자백을 했던 것으로, ○○고등학교 前 이사장은 “김모 행정실장이 자신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았다”며 공연히 허위사실로 김모 행정실장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알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취하

### 조정신청 후 이행결과

■ 『[추후보도] “△△고 전 재단이사장 허위자백 탓에 행정실장 비리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7년 4월 19일자 사회면)

■ 내 용

본지는 2015년 12월 3일 사회면 『울산 ○○고→△△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2016년 1월 28일 사회면 『울산 ○○고 전 이사장, 현 교장, 행정실장 등 기소』, 2016년

3월 15일 사회면 『○○고 전 이사장 “뇌물 주고 받았는데 왜 무혐의냐”』 제하의 각 기사에서, △△고등학교(前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행정실장이 임용 당시 ○○고등학교 前 이사장에게 700만원을 줬다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1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교사 채용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재판 결과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전 이사장은 김 행정실장을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례. 14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명됐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명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678·679 추후·손배청구
<b>신 청 인</b>	김○○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노컷뉴스)
<b>중 재 부</b>	서울제3중재부
<b>접 수 일</b>	2017. 4. 3.
<b>처리결과</b>	각하결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시 의회에서 제명처분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추후보도와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중재부는 신청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언론중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해 각하결정 하였다.
- 병합사건 : 2017서울조정680~696(인터넷 매일일보, 인터넷 시민일보, 인터넷 신아일보, 아시아뉴스통신, 인터넷 내일신문, 인터넷 일간투데이, 인터넷 아주경제, 인터넷 환경일보, 뉴스시스), 2017서울조정705·706(시사통신)

#### 조정대상보도

- 『○○시의회, 김○○ 의원 제명안 가결』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5년 4월 20일자 사회면)

## ■ 내 용

○○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 김○○의원을 제명처분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11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긴 9명의 찬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가 낸 제명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들의 도박, 성관련 행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함에 따라 시의회가 지난달 19일 진상규명과 사실확인을 위해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김 의원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일 자치단체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에 따른 결원통지를 통보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1. 제목 : 민주당소속 시민단체선정 베스트 김○○의원, 피고 ○○시의회(의장: 나○○)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김의원 제명 결의, 김○○의원 2심 및 3심 대법원에서 승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5월 14일날 정치면에 ○○시의회, 김○○의원 제명안 가결이라고 기사화 했습니다.

신청인은 sns 등에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없으며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원들의 말만 듣고 신청인이 비방했다거나 비방했다라는 사실이 아닌 기사를 기사화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이어 3심에서도 김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2심 법원에서는

1. 김의원이 이 사건이 있기 약2년 전(제6대의회)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비를 빌린 것(1천만 원)을 제7대의회에서 문제삼을 수 없는 점(시간도과)
2. 수의계약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시의회 의회운영위원 회의실을 의장실로 변경하는 공사를 의원들 몰래 하려고 했던 의회사무국장(4급)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장인 원고 김○○ 의원위원장이 긴급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막았습니다.

그런 후, 의회사무국장에 대해서 시장에게 의회가 아닌 시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던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인사개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인사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냄.

3. 조례심의 시 조례와 관련된 단체(참고 : 조례에 1개 단체가 2개 이상 시 위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인데, 3개 이상 위탁을 하고 있는 00원장이 의원에게 협박전화 함)에서 의원들에게 협박전화가 왔음.

그래서, 그 조례심의 시 비공개회를 하자고 ○○○○위원회(위원7명)에서 ○○○당 (현 ○○당) 김△△의원의 제안으로 6명이 찬성해서 비공개로 진행됨. 시의회에서는 원고(김○○)가 선동해서 비공개했다고 문제 삼음(그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윤리위에 상정할 안건이 없다보니 급조해서 만든 흔적임).

그러나, 법원에서는 ○○○당 김△△의원의 비공개회의 제안으로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서 비공개회를 한 것은 김의원이 선동했다고 보지 않음.

4. 원고(김○○)가 동료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도박 및 성매매 등을 했다고 기자회견 및 SNS에 올려 동료의원들간 분란을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기자회견 및 SNS에도 분란을 조장하거나 대부분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 선정 최고 베스트의원이었다는데, 이유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수의 의원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사실도 아닌 내용 등을 가지고 제명까지 한 것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이 사건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고, 가정도 흔들리게 됐으며 정치적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정치적 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도 그들 중 단 한사람도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지만, 경험해서는 안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계기가 됐다.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다시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동료를 모해하는 사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의원은 위의 내용에 대해서 2심은 2016년 11월 3일 및 3심 대법원은 2017년 3월 9일 판결에서 이겼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각하결정

## 각하 결정서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서 ○○시의원인 신청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등으로 제명됐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 및 대법원은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추후보도와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2. 판단

가.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요건을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명의결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언론중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인, 즉 형사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14.

## 사례. 15

지하철 역무원인 신청인이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1966·1967 추후·손배청구
<b>신 청 인</b>	최○○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채널에이
<b>중 재 부</b>	서울제5중재부
<b>접 수 일</b>	2017. 10. 31.
<b>처리결과</b>	조정성립(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지하철 역무원인 신청인이 막차에서 내린 여대생을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 보도하고 신원이 드러나도록 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추후보도와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 측에서 추후보도 외에 포털 등에서 검색되는 잔존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해주는 대신 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1

- 『역무원이 치마 속 ‘찰칵’』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8월 8일자 ‘뉴스 TOP10’ 프로그램)

## ■ 내 용

- ▷ 앵커 : 지하철 역무원이 막차에서 내린 여대생을 안내하면서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찾기 위해 녹화된 CCTV를

돌려보다 적발했습니다.

▷ 기자 : 늦은 밤,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한 여대생.

○○역에서 열차가 끊기자 열차에서 내려 역무원 A씨에게 나가는 길을 물어봤습니다. 손으로 이곳 저곳 가리키며 길 안내를 한 A씨. 친절을 가장하며 뒤에선 여대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두 차례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여대생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지하철역 CCTV를 살피던 경찰이 역무원의 범행을 확인한 것.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역무원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 안○○ / 남대문경찰서 형사과장 : “CCTV를 통해서 범행 장면을 확인한 사안이었고, (조사 전에) 휴대폰에 들어있던 범행 파일은 다 지운 상태였고.”

역무원 A씨가 몰카를 찍은 범행 현장입니다. A씨는 지금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 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서울메트로 관계자 : “근무를 하고 있는거죠. 판결이 확정되면 감사실에서 내부 조사를…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경찰은 사건을 성범죄특별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조정대상보도2

■ 『지하철 역무원이 치마 속 ‘찰칵’』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8월 9일자 ‘뉴스 TOP10’ 프로그램)

■ 내 용

지하철 승객을 보호해야 할 역무원이 여자 승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철역 출구를 찾는 여자 승객에게 길을

알려주는 척 하면서 흉측한 짓을 한 겁니다. <후 략>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기재 추후보도문을 채널A <뉴스 TOP10>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기재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1. 제목 : ‘지하철 역무원 여대생에게 몰카 혐의’ 무죄로 밝혀져
2. 본문 : 본 방송은 2016년 8월 9일 <뉴스 TOP10> 프로그램에서 “[단독] 지하철 역무원이 치마 속 ‘찰칵’”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역무원 A씨를 몰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결과, 역무원 A씨는 위 내용에 대해 2017년 9월 22일 무죄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채널A <뉴스A> 프로그램에서 [별지 1] 기재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1]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채널A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 기사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별지 2] 목록에 있는 게시물의 관리자들에게 이 사건 조정대상영상이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피신청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 보도 및 해당 인터넷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 [별지 1]

1. **제목** : ‘지하철 역무원 여대생에게 몰카 혐의’ 무죄로 밝혀져
2. **본문** : 본 방송은 2016년 8월 9일 “ [단독] 지하철 역무원이 치마 속 ‘찰칵’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역무원 A씨를 몰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결과, 역무원 A씨는 위 내용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 2] : \* 펴기사 url

2017. 11. 16.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지하철 역무원 여대생에게 몰카 혐의’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7년 11월 22일자 ‘뉴스A’ 프로그램)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제 4 장

### 손해배상 사례

## 제 4 장 | 손해배상 사례

### 사례. 16

필리핀 경찰의 한국인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 교민인 신청인의 모습과 발언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7서울조정449 손해청구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7. 3. 10.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서,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 강도를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교민인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방영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모습과 발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신청인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목소리 및 신체 일부를 방영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당사자 간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모두 동의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필리핀 살인사건, 한국인은 맞았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2월 12일자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 내 용

▷ 진행자 :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 지 모 씨가 납치됐습니다. 범인들은 지 씨 가족에게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고, 몸값을 줬지만 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필리핀 전현직 경찰이 포함된 범인 일당은 납치 당일 경찰청 주차장에서 지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은 화장장에서 소각해 화장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연루된 충격적인 범죄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 씨 가족에게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경찰청장을 유임시키고 사건 주모자는 여전히 체포되지 않는 등 필리핀 당국의 사건 처리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지 씨의 죽음에 한국인 조폭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필리핀 경찰의 범죄 사실을 몰타기 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경찰 등 부패한 공권력이 결탁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몰고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셋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종종 범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 3명이 마약범으로 몰려 700만 원을 갈취당하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30대 한국인 여성이 현지인을 살해 협박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현지 교민 20만 명에 한국인 관광객 1백만 명. 무법천지 필리핀에서 반복되는 한국인 대상 범죄,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략>

그런데 지난해 12월 30일 필리핀 경찰 7명이 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승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섭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 한국인들을 체포해 나옵니다. 한 한국인이 도망가자 권총을 뽑아들고 위협하며 쫓아갑니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해 보지만 여러 명의 힘을 당하지 못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집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경비가 왔지만 경찰인 걸 알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이들은 돈, 신발, 가방, 금붙이와 스피커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박씨 일행을 경찰서로 데려가 유치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박씨 일행은 아는 한국인들에게 약 700만 원을 빌려 경찰에게 줬고 불법 구금 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일 직후 박씨 일행은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냥 묻히는 듯했지만 지○○씨 살인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함께 부각됐습니다.

델라로사 필리핀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게 지난 지난 1일 문제의 경찰관들을 찾아가 거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 ▷ 델라로사/필리핀 경찰청장 : “한 짓이 너무 심각하고 정말 창피하다. XX. 이번이 몇 번째야. 한국인을 몇 번째 체포한 거야?”

그리고는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합을 줍니다.

- ▷ 델라로사/필리핀 경찰청장 : “엎드려.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올려”

이 와중에도 한 경찰관은 잘못된 게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 ▷ 앙헬레스 경찰관 : “적법한 단속이긴 했는데.”

- ▷ 델라로사/필리핀 경찰청장 : “적법했다고? 그럼 돈은 왜 빼앗았어? (한국) 관광객들을 왜 때렸어? 세상에 이런 ‘적법’이 어딤어?”

하루 뒤 2580 취재진이 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책임자에게 경찰청장에게 공개 망신을 당한 해당 경찰관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 ▷ 롤란도 도로자 수사팀장/앙헬레스 경찰서 : “돈을 빼앗은 7명의 경찰들은 경찰 본부 안에서만 근무합니다. 그들은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관광객을 납치해 강도질을 했는데도 내근을 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교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 ▷ 필리핀 앙헬레스 교민 : “그게 말이 됩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체포를 해서 감옥에 보내야지 ‘이 나쁜 놈아’라고 소리 지르고 카메라 앞에서 소리 지르고, 엎드려뺨쳐 시켜서 팔굽혀펴기 시키고, 코미디쇼. 그냥 쇼를 하는 거죠. 쇼. 보여주기 위한 쇼.”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별명은 ‘마사랍 코리아’입니다. 마사랍은 ‘맛있다’는 뜻의 필리핀어입니다. 한국인에게 돈을 뜯어내기 그만큼 쉽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ATM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 ▷ 롤란도 도로자 수사팀장/앙헬레스 경찰서 : “한국 사람들은 여기 휴가 와서 돈을 많이 씁니다. 바에 가면 돈을 나눠주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 모두에게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필리핀에 온 한국 관광객들은 대개 돈을 잘 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모두 부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방법보다 뒷돈을 주고 해결해 왔습니다. 이를 본 부패한 경찰과 공무원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문제를 만들어 돈벌이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해 겁을 주고 돈을 빼앗는 범죄를 필리핀에선 ‘셋업’이라고 부릅니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이유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7.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사례. 17

연예인의 악플 대응을 비난한 배우를 언급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해당 배우의 사진으로 잘못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7경기조정60 손배청구
신 청 인	신○○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인일보(인터넷 경인일보)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7. 3. 21.
처리결과	취하(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개그우먼 이○○가 악플러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모 배우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다고 하면서 해당 배우의 사진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배우와 전혀 관련 없는 신청인의 사진이 잘못 게재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 1,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한편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가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재한 것에 불과하나 이를 최종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심리 기일 이전에 피해에 대한 금전 지급을 약속하여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배우 온○○, ‘악플 강경대응’ 이○○ 공개비판...“당신이 성희롱한 男연예인은?”』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3월 19일자 연예면)
- 내 용  
배우 온○○가 개그우먼 이○○를 공개 비판했다.

19일 온○○는 ‘이○○ 100억 줘도 너네랑 안해 악플러 법적 대응 예고’기사에 “댓글로 조롱당하니까 기분나쁜가요? 당신이 공개석상에서 성희롱한 남자연예인들 어땠을까요?”라며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다.

그는 “대놓고 화낼수도 없게 만드는 자리에서 씩씩히 웃고 넘어갔을 그 상황. 이미 고소 열 번은 당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부끄러운줄이나 아시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가 방송을 통해 남자 연예인들에게 했던 과도한 스킨십과 성적인 언행을 문제삼은 것.

한편, 이○○는 지난 18일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촬영비 두둑이 챙겨줘도 절대 저탄 돼지X이랑 안 한다’, ‘누군가 자본주의의 끝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슬리피를 보게 하라’ 등 자신을 향한 악플을 캡처해 공개하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 기대해도 좋아요”라고 입장을 밝혔다.

### 조정신청취지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취하

### 취하 후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600,000원 지급

## 사례. 18

취업난에 비싼 졸업앨범 대신 기념사진으로 대체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단체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948 손해청구
<b>신 청 인</b>	1.정○○ 2.조○○
<b>피신청인</b>	이데일리 주식회사(인터넷 이데일리)
<b>중 재 부</b>	서울제1중재부
<b>접 수 일</b>	2017. 5. 26.
<b>처리결과</b>	조정성립(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최근 대학생들이 비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졸업앨범 대신 ‘우정화보’를 찍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우정화보’ 사진을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부정적인 취지의 기사에 게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각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보도 이전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하고, 신청인이 포털 등 해당 기사가 게재된 사이트의 URL을 제공하면 피신청인이 각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동기도 없고, 돈도 없고…졸업앨범 대신 우정화보』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이데일리 2017년 5월 25일자 사회면)

## ■ 내 용

“생애 한 번뿐이긴 하지만 메이크업이랑 옷 구입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돼서요…”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 이모(24·여)씨는 22일 “졸업 사진 대신 과 동기들과 자체적으로 기념 사진을 찍을 생각”이라며 “졸업 가운과 학사모는 학교에서 무료로 빌리고 촬영은 사진을 공부하는 후배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했다. 이씨는 “대학 생활 추억이 깃든 동아리방이나 캠퍼스 곳곳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게 훨씬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인턴·공시족·졸업유예로 동기들 흩어져 졸업앨범 무의미”

캠퍼스의 추억을 담은 졸업앨범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취업난에 마음이 편치 않은 데다 주머니 사정까지 여의치 않아서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졸업앨범 촬영 시즌을 시작했지만 졸업앨범 구입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한양대가 졸업앨범 신청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2월 1182명에서 지난해에는 933명으로 줄었다. 이번 졸업예정자 4000여명 중 졸업앨범 구매 의사를 밝힌 인원은 990명으로 조사됐다.

졸업예정자 4명 가운데 1명만 졸업앨범을 구매하는 셈이다. 한양대 학생처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줄고 있다”며 “졸업예정자 가운데 졸업을 미루는 인원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강대의 경우 지난해 2월 앨범 신청자수는 691명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500명에 그쳤다. 연세대 역시 최근 3년 동안 앨범 신청자가 해마다 300~400명씩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졸업앨범을 담당하는 사진관 관계자는 “평균 70%의 구매율을 보이던 고려대도 올 들어 60%대로 줄었다”며 “졸업 앨범이 학창 시절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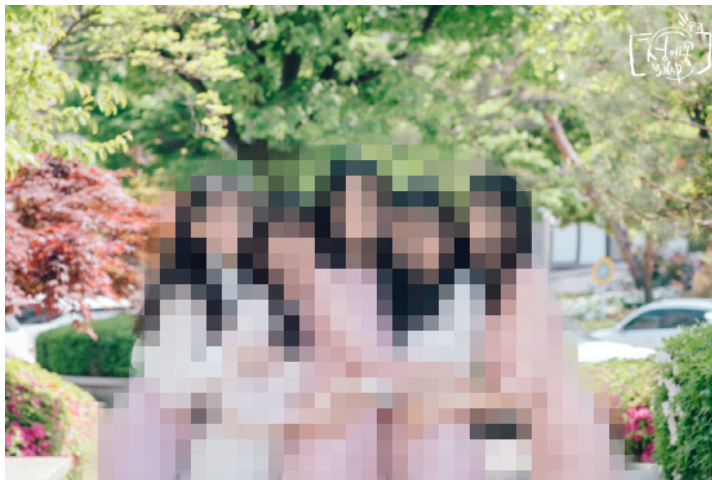
5분 찍는데 수십 만원... 졸업앨범 대신 우정화보

졸업앨범을 찾는 학생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는 비싼 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졸업앨범 가격만 평균 5만~8만원 수준인 데다 정장 구입과 머리단장, 메이크업 비용까지 더해지면 졸업앨범을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0만~50만원을 넘기기 십상이다. 서강대 4학년 강모(25·여)씨는 “5분도 안 되는 사진 촬영을 위해 수십 만원을 들이는 것은 솔직히 사치라고 본다”라며 “부모님은 평생 한 번 찍는 건데 괜찮다고 하시지만 죄송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거나 인턴·어학 연수 등으로 동기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찍는 졸업앨범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중앙대 4학년 양모(29)씨는 “입학 이후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들도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 등 저마다의 이유로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다”며 “졸업 시점이 같다는 이유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찍느니 차라리 안 찍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틀에 박힌 졸업앨범 대신 친한 친구들과 자유로운 복장으로 ‘졸업용 우정 화보’ 촬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8월 코스모스 졸업을 앞둔 김모(24·여)씨는 “학과 친구들과 몇 명과 돈을 모아 스냅 업체에 촬영을 맡길 것”이라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학창 시절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스냅사진을 찍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스냅 촬영 전문 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오는 예약의 절반 이상이 졸업 사진 관련 문의”라며 “1인당 2만~5만원이면 충분해 학생들이 많이 찾는 편”이라고 전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심리적 여유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계좌로 2017년 6월 15일(목)까지 1인당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블로그나 카페 등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포함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조정 대상 보도사진이 게재된 경우, 신청인은 2017년 6월 15일(목)까지 피신청인에게 게시물의 URL을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2017년 6월 22일(목)까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위 조정대상 보도사진이 삭제되도록 요청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6. 5.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각 500,000원 지급

## 사례. 19

서울광장 쿼어축제 현장에서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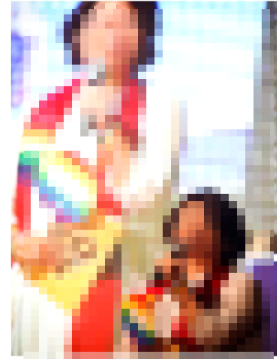
<b>사 건</b>	2017서울조정1263 · 2017서울조정1264(병합) 각 손해청구
<b>신 청 인</b>	김○○
<b>피신청인</b>	국민일보 주식회사(인터넷 국민일보, 국민일보)
<b>중 재 부</b>	서울제8중재부
<b>접 수 일</b>	2017. 7. 23.
<b>처리결과</b>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서울 쿼어축제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모 목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서울 쿼어축제에 참석한 해당 목사의 사진 등을 '페이스북 캡처'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진은 사진작가인 신청인이 촬영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기사에 사용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유가지인 점, 공개된 페이스북 게시물이라도 신청인이 보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적인 목적에서 보도가 이루어졌고 사진의 출처를 표기했으며, 공개된 내용을 캡처하여 보도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하였다.

## 조정대상보도1

- 『“임○○ 목사, 잘못된 신론 구원론 갖고 있다”』(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7월 21일자 종교면)
- 내 용



## 조정대상보도2

- 『“임○○ 목사, 반성경적 주장...정통교회와 신학 공격”』(국민일보 2017년 7월 24자 22면)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18.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례. 20

여자 혼자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여장남자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1275 · 1276 정정 · 손해청구
<b>신 청 인</b>	이○○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닷컴)
<b>중 재 부</b>	서울제3중재부
<b>접 수 일</b>	2017. 7. 27.
<b>처리결과</b>	취하(정정), 조정성립(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여자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여장을 한 채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 남성이 있다는 제보와 함께 CCTV 영상 캡처 화면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보도 속의 CCTV 영상 캡처 화면 인물인 신청인은 해당 영상은 오피스텔 침입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얼굴이 공개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관련 없는 보도에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초상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소송보다는 조정절차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10,000,000만원의 손해배상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1

-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인종 누르며 문 열리는 여장 남자, ‘섬뜩’』 제하의 기사 (아시아 경제닷컴 2017년 7월 21일자 사회면)

## ■ 내 용

여자 혼자 사는 오피스텔서 여장을 한 채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익명의 한 여성은 자신의 집에 여장을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려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여성이 올린 영상을 보면 한 눈에 봐도 건장한 남성이 여장을 한 채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은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지 않자 연신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손잡이를 잡은 채 주변을 둘러보는 등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자리를 뜬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범인을 검거하진 못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여성은 “너무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잡지 못했다”며 “제발 이 사연을 보고 범인을 꼭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변의 도움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더럽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다니냐”, “세상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무서워서 못 살겠다”,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 누르면 절대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등 섬뜩한 제보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여성이 제보한 해당 게시물은 조회 수 4천부를 돌파하고 공유 200회를 넘어서며 네티즌들 사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 조정대상보도2

- 『물카 찍고 초인종 누르고...‘여장남자’ 잦은 출현, 취향과 범죄 사이』 제하의 기사 (아시아 경제닷컴 2017년 7월 25일자 사회면)

## ■ 내 용

지난 19일 여장을 한 남성이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동영상에는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은 남성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용 원피스를 입은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찍다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범행 한 달 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2013년에는 30대 남성이 여장을 하고 서울 모 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남성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6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여장을 한 남성이 벌이는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장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장을 했을 때 범행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여장은 범행 타깃의 경계심을 낮춘다. 여장 범죄 가운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행이 많은 까닭이다. 또한 여장은 성별을 감추는 변장술로도 이용된다.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를 피하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다.

잇단 여장 범죄로 여성들의 불안감은 늘어나지만, 여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만 단순 여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2015년 여장을 하고 초등학교 인근 정자에 앉아있던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경범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경범죄 처벌법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차림새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여장이라는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성의 복장을 입은 취향을 가진 ‘크로스 드레서’ 때문이다. 이들은 성소수자의 일부로 분류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여장을 하고 여자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여장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해방감을 느꼈다”며 “평소 여장이 취미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화장실 칸 안을 엿보거나 음란 행위를 시도하지는 않았고 범죄 전력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여성 옷차림이라고 하더라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거나 긴 머리,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시아경제닷컴(<http://www.asiae.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가. 제목 :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인종 누르며 문 열라는 여장남자’ 허위정보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21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인종 누르며 문 열라는 여장 남자,” ‘섬뜩’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25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몰카 찍고 초인종 누르고... ‘여장남자’ 잦은 출현, 취향과 범죄사이”라는 제목으로 차림새만으론 처벌불가... ‘여장’ 자체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는데, 이 불쾌감 어찌지? 라고 각각 사실과 무관한 제보 보도로 그대로 반영했는데..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여장남자는 그 날 인천 주안이 아니라 작년 8월 10일에 강릉에 놀러갔었고 오피스텔 CCTV가 아닌 마사지 가게 CCTV로 찍혔던 영상을 조작해 허위 유포로 인해 여성들에게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 한 인격과 존중을 무시한 채 초상권과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취하(정정), 조정성립(손배)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는 신청인에게 2017. 8. 31.(목) 18:00까지 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8. 25.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지급

## 사례. 21

집안일 부담 등으로 암 전문 요양병원에 여성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사 건** 2017서울조정1799, 2017서울조정1800(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유○○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7. 9. 29.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집안일 부담 등으로 암 전문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중인 여성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암환자인 신청인의 신상(실명, 나이) 및 암 경력 등 개인정보를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도하여 성명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 10,000,000만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은 실명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기고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재부가 손해배상 액수를 일부 조정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블로그 등에 게재된 복제기사의 노출·검색을 차단 조치해준다는 전제 하에 신청인이 중재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내 몸도 힘든데 아내엄마 노릇은 어떻게… 병원이 낫죠”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7년 7월 14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7월 14일자 사회-복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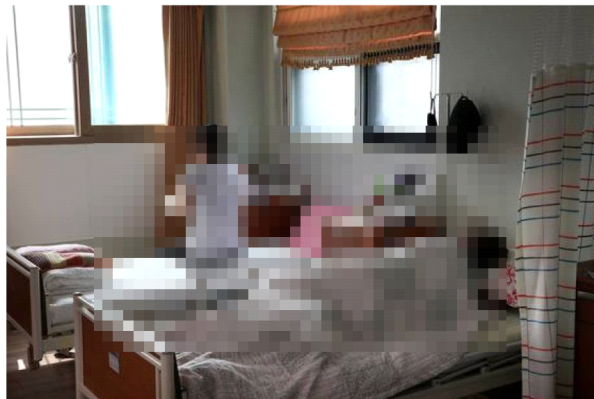
## ■ 내 용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시 ○○요양병원, 3층 건물 80병상에 암 환자가 거의 다 찼다. 대부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이라 간병인은 필요 없다.

병원 복도에는 창이 크게 나 있고 여기저기에 화분이 놓였다. 창틀에 운동화가 있고, 빨래건조대에 수건·속옷 등이 널려있었다. 바닥에 마루가 깔려 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마치 가정집 같은 분위기다. 침대 옆에는 서랍장이 있고 책·영양제 등 소지품이 가득했다.

4인 병실에 입원 중인 유○○(○○)씨는 기자가 들어가자 마치 집에 손님을 들이듯 “차 한잔 하실래요?”라고 물었다. 유씨는 ○○암 환자로 지난해 8월 입원했다. 부친상이 났을 때와 명절에 잠깐 퇴원했다가 돌아왔다.

유씨는 지난 2월 방사선 치료가 끝났다. 하지만 유씨는 “집에 가면 가족이 힘들어하고, 혼자서 밥 챙겨 먹고 집안일까지 하는 게 힘들어 여기에 계속 있다”며 “챙겨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병원이 집보다 편안한 공간이 됐다는 의미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아래 신청인 계좌로 2017. 10. 27.(금) 18:00까지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17. 10. 27.(금) 18:00부터 중앙일보 전자판에서 신청인 관련 내용 및 사진이 더 이상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기자의 개인 블로그 게시글에서 신청인 관련 내용 및 사진이 2017. 10. 27.(금) 18:00부터 더 이상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포털 사이트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에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및 사진이 게재 및 확산된 경우, 신청인은 해당 URL을 특정하여 URL 목록을 피신청인에게 2017. 10. 27.(금) 18:00까지 전달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의 삭제를 2017. 11. 3.(금) 18:00까지 요청한다.
5.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0. 20.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제 5 장

### 기사 노출 · 검색 차단 사례

### 사례. 22

신청인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교비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7서울조정121 정정청구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7. 1. 19.
처리결과	조정성립(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사기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신청인이 교비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심리 결과 조정대상 기사의 노출 및 검색 차단 조치를 하기로 양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사기 혐의 구속된 ○○○○○○○스쿨 정○○ 목사, 교비 횡령 의혹도』(인터넷 크리스천 투데이 2016년 12월 8일자 교육면)

## ■ 내 용

정 목사는 김모 권사로부터 32억 원을 차용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그는 학교 운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구속 전 정 목사는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목사 부인인 ○○○○○○스쿨 총감은 “정 목사가 구속되기까지 최대의 실수는 차용증을 써준 것이고, 채권자가 고소를 한 것은 제대로 예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 목사 성격이 강직해서 채권자라도 비굴하게 굽신거리지 않다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학부모에 따르면 정 목사의 부인은 정 목사가 법정구속돼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목사 구속 후 부인인 학교 총감은 학부모들에게 “자신은 돈도 없고 학교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면서,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정 목사는 학교 경영권을 개인과 단체를 통해 넘기려 했으나 번번히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또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학부모들을 속였으며, 심지어 자신을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대표로 하여 조합을 구성해 5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한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고, 외국인 교사들에게 체류 비자를 합법적으로 제공해 줄 수도 없어 그들의 신분도 불안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교사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평생교육원 또는 어학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이 학교는 평생교육 시설로만 등록돼 있었고, 이마저 2015년 8월 정 목사가 직접 폐업신고를 하고 학교를 운영, 외국인 교사들에 대해 탈세와 불법 체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당시 학부모들은 개강 이틀 전에도 교사 총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사들은 6개월에서 1년씩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정

목사는 오히려 직원들을 대상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일부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회사와의 관계… 모든 금전적 문제는 수탁회사 대표에게 요구하라?

○○○○○○스쿨이 자리한 건물은 ○○○대학교의 소유로, 한 수탁회사가 관리 운영중이다. 학교는 자금난에 빠진 후 지난 2년 6개월간 관리비 등 18억 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정 목사 변호인은 ‘법정진술자료’라는 것을 가져와 정 목사와 수탁회사 대표 A씨가 학교의 동업자이므로 모든 금전적 문제는 A씨에게 요구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억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에서 A씨는 2015년 가을학기에 폐교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 목사의 부탁으로 2016년 6월까지만 운영할 것을 허락했다. 이후에는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을 모집하지 말고 최소 폐교 2개월 전 학부모들에게 알리라고 했다. 정 목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나,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가을학기 학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학기 전 학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학교에 돈이 있기 마련인데도 급식과 스쿨버스 운영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총감에게 ‘돈을 어디에 다 썼느냐’고 물었더니 ‘밀린 빚도 갚고 여기저기 썼다’고 하더라”며 “학비를 학교 운영에 제대로 썼는지 경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학부모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정○○ 목사에게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크리스천투데이(<http://www.christiantoday.co.kr>)의 홈페이지 교육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이 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사기 혐의 구속된 ○○○○○○○스쿨 정○○ 목사’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크리스천투데이)은 지난 12월 8일자 교육면에 ‘○○○○○○○○스쿨 사기 혐의로 구속된 ○○○○○○○스쿨 정○○ 목사, 교비 횡령 의혹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기사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으며 정○○ 씨는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여부가 부정확한 내용을 실명과 함께 거론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1. 피신청인은 2017년 2월 8일까지(단,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  
가. 크리스천투데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나.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2. 1.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례. 23

남이섬의 매입과 개발이 설립자 조부의 친일 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1370 · 1371 정정 · 손해청구
<b>신 청 인</b>	주식회사 남이섬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인사이트)
<b>중 재 부</b>	서울제6중재부
<b>접 수 일</b>	2017. 8. 8.
<b>처리결과</b>	조정성립(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춘천 근교의 대표적 휴양지 남이섬의 소유주가 친일파의 후손이고, 남이섬이 친일 재산과 연관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남이섬의 설립자는 친일파인 조부의 친일 재산과 무관하게 본인의 퇴직금 등 사재로 남이섬을 구입한 것이며, 설립자와 그 부친은 어떠한 친일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이섬이 친일재산과 연관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은 남이섬의 설립자를 친일파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므로 정정보도는 어려우나 기사 삭제 조치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신청인 측도 이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원만히 화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연인들의 여행지 ‘남이섬’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진실』 제하의 기사 (인사이트 2017년 7월 29일자 홈페이지)

■ 내 용

휴가철을 맞아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남이섬의 역사적 배경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남이섬의 소유주가 친일파 ○○○의 후손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춘천 근교의 대표적 휴양지 남이섬은 친일파 ○○○의 손자 ○○○ 한국은행 초대 총재가 퇴직 후 구입한 땅으로 1966년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화됐다.

이후 1994년 ○○○ 증손자이자 ○○○의 아들 ○○○가 회사 명의를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전문경영인이 남이섬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대 지분은 여전히 ○씨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 일가는 남이섬이 ○○○의 ‘퇴직금’으로 매입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의 재산 대부분이 친일파 ○○○에게 물려받았다는 점이다.

명성황후의 친척이자 조선 말기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는 1910년 한일 병탄 조약 후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를 받았다.

○○○의 후손들은 현재 남이섬을 비롯해 한국에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재산은 ○○○가 일본을 등에 업고 부정축재한 재산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참여정부 당시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남이섬을 국가에 귀속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친일재산이라도 법인화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는 내용의 관련법 조항으로 인해 실패에 그쳤다.

현재 남이섬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이 넘는 ‘국민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남이섬이 친일 재산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인사이트(<http://www.insight.co.kr>)의 홈페이지 이슈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이 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남이섬이 친일 재산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29일자 홈페이지 이슈면에 “연인들의 여행지 ‘남이섬’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남이섬 소유주가 친일파의 후손이며, 남이섬이 친일 재산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남이섬을 매입하고 설립한 ○○○씨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가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 진보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 함세웅 신부)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씨의 부친 ○○○ 또한 어떠한 친일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남이섬이 친일 재산에 연관되어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 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및 2016. 10. 1.자 “남이섬, 알고 보니 ‘친일파’ 민영휘 후손 재산” 제목의 기사를 인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노출 및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나. 인사이트 2017. 6. 7.자 “‘친일파’ ○○○ 무덤 관리 가옥을 문화재로 등록한 강원도” 제목의 기사 중,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재산은 유명 관광지 ‘남이섬’으로 남이섬은 친일파 ○○○의 손자 ○○○ 전 한국은행 초대 총재가 퇴직한 후 구입한 땅으로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1966년)하면서 법인화됐다. 1994년 ○○○의 증손자 이자 ○○○의 아들 ○○○가 회사 명의를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변경하면서 대표 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전문경영인이 남이섬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 지분은 ○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 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 및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해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8. 23.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례. 24

영화감독의 여배우 폭행 및 베드신 강요 피소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영화의 PD였던 신청인이 SNS에 올린 글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1405 손배청구
<b>신 청 인</b>	홍○○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스타뉴스
<b>중 재 부</b>	서울제2중재부
<b>접 수 일</b>	2017. 8. 11.
<b>처리결과</b>	취하(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영화 PD인 신청인이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영화감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SNS에 공개대상을 '친구'로 제한하여 올린 지극히 개인적, 주관적 글을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실명으로 인용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한편 해당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조정신청 건(인터넷 스포츠조선)에 대해 중재부는 손해배상 2,000,000원 및 기사노출·검색을 차단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바 있으며, 이 건을 포함하여 최초 보도를 전제한 매체들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조정심리 전 기사노출·검색 차단 조치를 하여 신청인이 전부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 PD, 김○○ 감독 피소 심경..“가해자 만드는 쉬운 세상”』 제하의 기사 (스타뉴스 2017년 8월 4일자 엔터테인먼트/영화면)

## ■ 내 용

영화 ‘○○○○’의 프로듀서가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 폭행 및 베드신 촬영 강요를 한 혐의로 피소된 김○○ 감독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 홍○○ 프로듀서(PD)는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A씨의 김○○ 감독 고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홍 PD는 “4년도 넘은 일이라 기억에서도 자유롭지 않음이 유감이지만 나와 스태프들의 귀는 달혀서 들리지 않았던 폭언이 그녀에게만 들렸던 것인지”라며 “나와 스태프들에게는 보이고 인지되어 사전헌팅까지 마무리됐던 장면이 그녀에게만 보이지 않아 강요된 것인지 아주 혼란스러운 날이었다”고 밝히면서 지난 3일 알려진 A씨의 김○○ 감독 고소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내가 기억하는 건 여주인공이 시작하자마자 돌연 잠적하여 못하겠다고 하고. 우린 영화가 혹 엮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잠을 설치고. 1인2역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에 잠설친 아침부터 영등포건 노랑진이건 가발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폭행이 이뤄졌다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대꾸가 소심해지는 것이 역을 하다면서도 속상하고 화가 올랐다고 했다.

홍○○ PD는 “당했다. 하고 말만 꺼내면. 다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로 만드는 쉬운 세상이구나. 우리 스태프들은 폭행방조자였던가”라며 “막 가지 말자, 정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영화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개봉한 ‘○○○○’에서 엄마 역할에 캐스팅된 후 하차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올 초 이와 관련한 일을 영화인신문고에 접수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감독 측은 지난 3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감독은 A씨와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냈고, ‘○○○○’ 촬영을 약 2회 하고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이에 수차례 현장에 나올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현장에 오지 않았고, 출연 중인 다른 배우를 1인 2역으로 급하게 시나리오를 수정해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4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취하

#### 조정신청 후 이행결과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례. 25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들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올린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의 모습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1589 손배청구
<b>신 청 인</b>	노○○
<b>피신청인</b>	주식회사 중앙일보(온라인 중앙일보)
<b>중 재 부</b>	서울제3중재부
<b>접 수 일</b>	2017. 8. 30.
<b>처리결과</b>	취하(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제주도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상습적으로 손님들을 도둑 촬영, SNS 계정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해당 SNS에 올라온 여성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진을 보도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헤어스타일, 의상, 나머지 신체가 전부 노출되어 주변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며, 성희롱하는 댓글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며 손해배상 50,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피신청인은 조정 기일 이전에 해당기사의 노출 및 검색 차단 조치를 했고,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1

■ 『제주 카페 알바생 ‘손님 도촬’ 논란』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8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제주 협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상습적으로 도둑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오후 2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주의 한 카페 알바생이 지속해서 손님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올려온 사실이 알려졌다.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은 특히 여성 손님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 트위터엔 사진과 함께 감상도 적혀 있는데, 사진을 찍힌 당사자가 보면 인격적으로 모욕감이 들만한 내용도 적혀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트위터 계정은 황급히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이후 알바생은 이날 오후 2시 41분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용도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 특별히 여성분들께 불쾌함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겠으며, 직장의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2시 48분경에 다시 “모든 피해자분과 저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신 매장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사진은 삭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께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후 2시 50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는 제 개인적인 일탈/불법행위였습니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가게의 점주와 통화 결과, 점주는 “트위터를 하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 역시 오후 2시경 지인의 연락을 받고 문제의 사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점주는 “즉시 해당 알바생에게 전화로 최대한 빨리 문제가 된 사진들을 계정에서 내릴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점주에 따르면 해당 알바생은 열흘 정도 전에 퇴사했다고 한다. 점주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대신 사과의 뜻을 밝혔다.

### 조정대상보도2

- 『[카드뉴스]손님들 도촬한 제주 카페 알바생』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8월 28일자 사회면)

## ■ 내 용

제주 협재의 유명 카페 알바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여성의 몸을 몰래 적나라하게 담았고 감상평과 함께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섹시하다며 말을 걸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음흉한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이게 도촬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문제가 되자 그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의 뜻과 함께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카페 점주에 따르면 이 알바생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열흘 전쯤 퇴사했다고 합니다.

예쁜 제주 카페의 즐거웠던 경험을 소름끼치게 만드는 ‘도촬’ 알바생 무서워서 어디 가겠나요.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취하

### 조정신청 후 이행결과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제 6 장

### 기타 사례

## 제 6 장 | 기타 사례

### 사례. 26

수면내시경 도중 환자가 숨진 사고는 담당의사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병원의 과실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7부산조정2·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피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엔엔(KNN)  
**중 재 부** 부산중재부  
**접 수 일** 2017. 1. 24.  
**처리결과** 기각결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수면마취 도중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사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의료인 개인의 과실을 병원의 과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정보도 및 6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입건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조정대상보도

- 『수면 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과실로 드러나』 제하의 보도 (KNN 2017년 1월 23일자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 ■ 내 용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7월, KNN이 연속 보도한 내시경 수면 마취 도중 5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의사 47살 홍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해 6월 28일, 부산 ○○동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수면 마취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호흡 부전을 일으키고 응급 처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KNN<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수면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과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2. 본문 : 본 방송은 1월 23일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수면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과실 드러나’ 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6년 6월 28일 내시경 수면 마취 도중 5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건에 대해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의사 47살 홍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병원과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앞서 병원과실로 보도된 내용은 잘못된 보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앞서 ‘수면 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과실’로 보도한 사실은 사실과 무관하며 병원과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 기각결정

## 기각 결정서

### 주문

이 사건 조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이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7년 1월 23일 KNN [모닝와이드] 뉴스 프로그램에서 ‘수면 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 과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KNN이 연속 보도한 내시경 수면 마취 도중 5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의사 홍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병원의 과실이라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로 신청인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정정보도 게재 및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 판단

##### 가.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는 내시경 수면 마취 도중 5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 홍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로 기사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입건한 의사와 간호사가 사건 당시 신청인 소속 직원이었던 점도 알 수가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는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3.

## 사례. 27

서울시의 택시안심귀가서비스가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548 정정청구
<b>신 청 인</b>	서울특별시
<b>피신청인</b>	주식회사 문화일보
<b>중 재 부</b>	서울제4중재부
<b>접 수 일</b>	2017. 3. 22.
<b>처리결과</b>	조정성립(후속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서울시에서 기존의 서비스 대신 카드선승인, 택시 어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도하면서 승객과 기사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고 있고,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카드선승인 등의 택시안심귀가 서비스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며, 신용카드가 없어도 택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기사의 주된 취지가 서울시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불충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평가의 영역이므로 정정보다는 반론보도 게재를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해당 서비스를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제안했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승객도 기사도 어리둥절... 서울 새 '택시안심귀가'』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7년 2월 13일자 010면)

## ■ 내 용

서울시가 2014년 도입했던 ‘근거리무선통신(NFC)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최근 중단하고 ‘카드 선승인 제도’나 ‘민간 스마트폰 택시 애플리케이션’(택시 앱)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 새로운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이용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기존 NFC 서비스는 이용이 저조하고 유지비용이 연 2000만 원 이상 든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 1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받으려는 승객은 카드 선승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간 택시 앱을 설치해야 한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카드 선승인 제도는 승객이 운행 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패드형 카드단말기에 신용카드를 5만 원을 가결제하면, 운행을 마친 뒤 최종 금액이 결제되고 가결제 금액은 취소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문화일보 취재진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택시 승객 10명에게 ‘카드 선승인을 알고 있나’라고 물은 결과, 알고 있다는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카드 선승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제도다. 시는 ‘카카오 택시’ 등과 같은 택시 앱을 쓰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택시를 만들겠다더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민간에 떠넘기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대학생 김선정(여·20) 씨는 안심귀가서비스가 카드 선승인과 택시 앱으로 대체됐다는 설명에 “안심 귀가하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현금을 내고 스마트폰이 없는 승객은 위험해도 좋다는 뜻인가”라고 화를 냈다.

택시기사들조차 카드 선승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었다. 개인 택시기사 박모(61) 씨는 “카드 선승인은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며 “이용하는 손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은 “시로부터 협조 공문을 갑작스럽게 전달받아 일선 기사들에게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NFC 서비스도 스마트폰을 이용했기 때문에 ‘카드 선승인’을 못 하더라도 ‘택시 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피신청인은 문화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 및 본문은 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와 단으로 보도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승객도 기사도 어리둥절...서울 새 '택시안심귀가'」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에 『승객도 기사도 어리둥절...서울 새 '택시안심귀가'』 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서울시가 'NFC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중단하고 '카드 선승인 제도'나 '민간 스마트폰 택시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하면서 새 제도 시행 첫날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 새로운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며, 신용카드가 없으면 안심귀가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 i) 카드 선승인제도는 2007년 택시 카드결제기 도입당시부터 운영되고 있고, 민간 스마트폰 택시 어플리케이션은 2015년 3월부터 다음 카카오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드 선 승인제도를 이용하는 택시 탑승객은 '17.1월 기준으로 월 15만 건이며, 택시 앱의 안심귀가서비스는 월 180만 건, 선불카드 등의 회원가입을 통한 안심귀가서비스는 월 5천 건 이용되고 있습니다.
  - ii) 신용카드를 통한 선승인제도 이외에도, 'taxiansim.com'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할 경우 보호자에게 문자메세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택시 앱을 통하여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NFC 서비스 기간에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었습니다.
  - iii) 그간 NFC 안심귀가서비스는 SK플래닛이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택시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이용건수 저조, 유지보수비용 등을 이유로 SK텔레콤 (현재 제공)이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여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하였다거나 신용카드가 없으면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해당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7년 4월 24일(월)까지 문화일보 사회면에 ‘서울시의 변경된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본문의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일에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4. 10.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안심귀가서비스 범죄예방 효과』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7년 4월 21일자 사회면)

#### ■ 내 용

서울시는 21일 택시정보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로 택시 관련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정보시스템, 카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카드 선승인 제도, 민간 스마트폰 택시 애플리케이션(택시 앱) 서비스가 결합돼 귀갓길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앱까지 합치면 서울시 택시 안전 관련 서비스 이용은 연간 2000만 건 이상에 이른다.

2013년 1월 도입된 택시정보시스템은 서울 전체 택시 7만2000대의 운행 거리, 위치,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위치정보만 하루에 2억여 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택시의 승객 승·하차 위치와 시간, 이동 경로가 저장돼 택시 이용 범죄 차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찰 등에서 요청하면 택시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제공, 수사에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시작한 카드택시 안심귀가서비스는 승객이 택시안심서비스 홈페이지(www.taxiansim.com)에 회원 가입할 때 등록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택시번호, 승·하차 시간, 위치 등 정보를 보호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 2011년엔 이용 실적이 125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만5756건으로 5년 사이 52배로 급증했다.

시는 2007년 10월부터 카드 선승인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카드 선승인 제도는 승객이 운행 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패드형 카드단말기에 신용카드를 5만 원을 가결제하면, 운행을 마친 뒤 최종 금액이 결제되고 가결제 금액은 취소되는 시스템.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은 없지만, 카드택시 안심귀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탑승 자료가 저장되기 때문에 승객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도입 초기인 2008년 이용 실적이 356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 1342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2331건까지 증가했다.

한편 택시정보시스템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간대별 택시 가동률과 승차율 등을 분석, 지난 3년간 12월에 13일씩 심야 시간대에 개인택시 부제(部制)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370건에 달했던 연말 승차난 관련 민원이 지난해 200건으로 46% 감소했다.

## 사례. 28

신청인 언론사가 발행하는 매체의 호외판에 가짜뉴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7서울조정703·70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 ○○○○○○○○○○○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JTBC)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7. 4. 7.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뿌린 호외가 대부분 가짜뉴스를 담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된 신청인 언론사의 호외판에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으며, 신청인 매체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합법적으로 호외판을 발행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에서 양 측의 조정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신청인은 가짜뉴스로 단정지어 보도하여 피해가 크다며 신청 취지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피신청인은 관련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친박 집회도 활용』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2월 6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 ■ 내 용

- ▷ 앵커 :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했다’ 지금 보면 황당할 수 있지만, 지난 미국 대선에서 수백만 건의 호응을 얻었던 가짜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가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만은 아니게 됐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은 북한의 지령이었다’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조작됐다, 이런 것들이죠. 지난 설 연휴에 퍼진 가짜 뉴스들입니다. 단순히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된 게 아니라, 아예 신문과 유인물 형식으로도 전국 곳곳에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들은 주말 친박 단체 중심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고스란히 소재로 활용됐습니다.

탄핵 국면을 틈타 기승을 부리면서 국정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가짜 뉴스들의 현주소, 먼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설 연휴 첫 날인 지난달 27일,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신문처럼 보이는 인쇄물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뿌린 호외입니다.

- ▷ 아파트 주민 : (새벽) 2시 반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데 그게 (호외) 하나씩 전 세대에 다 꽂혀 있더라고요.

같은 날 부산과 대전, 충북 청주 등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인쇄물이 발견됐습니다. 신문처럼 만들었지만 내용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가 없는 내용을 담은 ‘가짜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JTBC의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보이는 미용 시술 흔적은 다른 사람의 피부를 합성한 조작 영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면서 경찰 추산 인원만 보면 친박집회 인원이 촛불집회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합니다. ‘박사모’ 등 단체들은 지난 설 연휴 이런 인쇄물 300만부를 찍어 전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친박 집회도 활용”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월 6일 <뉴스룸>에서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친박 집회도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비평지인 ‘○○○○○’의 설날 특집 호외판을 영상으로 여러 번 반복해 비추면서, 이를 신문과 유인물 형식으로 전국 곳곳에 배포된 ‘가짜뉴스’라고 규정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 설날 특집 호외판 기사 내용들 중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은 전혀 없었으며, 또한 ‘○○○○○’는 호외판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잡지사업 매체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 조정불성립 결정서

### 주문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

### 이유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8.

## 사례. 29

이웃주민의 이유없는 칼부림에 신청인들이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사 건** 2017서울조정892·893, 2017서울조정894·895(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1. 이○○, 2. 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MBN, 인터넷MBN)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7. 5. 16.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후속보도, 기사수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이웃에게 이유없이 칼부림을 한 ‘묻지마 범죄’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신청인들이 ‘허겁지겁 도망갔다’고 표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잠시 자리를 피했을 뿐, 곧 범죄 현장에서 범인과 대항하여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다고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신청인들의 인터뷰를 포함한 후속보도 및 문제된 표현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수정하기로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이웃에게 이유없이 칼부림...끊이지 않는 묻지마 범죄』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5월 11일자 ‘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5월 11일자 사회면)
- 내 용
  - ▷ 앵커 : 오늘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아무 이유없이 칼을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본인에 대해 화가 났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였습니다.

▷ 기자 :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두 남성에게 누군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두 남성은 허겁지겁 도망가고 양 손에 뭔가를 든 남성이 다른 행인들을 위협하며 뒤를 쫓습니다.

50대 김 씨가 자신의 동네에서 오늘 새벽 광란의 흥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여성에게 느닷없이 흥기를 휘두른 뒤 도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흥기를 휘둘렀습니다.

▷ 동네주민 : “(피해자가) 잘해줬지, 여기 오면 요구르트도 주고, 이야기도 시키고 피해자가 얼마나 놀랐을까.”

잠시 뒤 이곳에 나타난 김 씨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다시 흥기를 휘둘렀습니다. 남녀 두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 서울 성북경찰서 관계자 : “본인에 대한 스트레스로 화가 나서 그랬고 피해자들 하고는 원한 관계가 없고…”

이런 ‘묻지마 범죄’는 매년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위협에 빠질 수 있는 묻지마 범죄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MBN 뉴스8>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MBN(<http://mbn.mk.co.kr>)의 홈페이지 뉴스>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이웃에게 이유없이 칼부림... 끊이지 않는 묻지마 범죄’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5월 11일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웃에게 이유없이 칼부림...끊이지 않는 묻지마 범죄”라는 제목으로 두 남성이 허겁지겁 도망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이○○과 이○○씨는 도망가기보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범인과 싸운 사실이 여러 CCTV에 찍혀있고 같은 사실을 MBC8시 뉴스 동영상에도 범인을 가격하는 영상이 나와있습니다. 이에 두 남성이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서를 통해 신청인들에게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신청인들과 관련하여 “용감한 시민들”(묻지마 범죄에서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은 용감한 시민들)이라는 부제로 2017년 6월 30일까지 「굿모닝MBN」뉴스 프로그램 중간 부분에 진행자의 통상적인 뉴스 진행 방식으로 다루되, 신청인들의 인터뷰를 포함하도록 하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뉴스 제작 및 방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2017년 6월 30일까지  
가. 인터넷MBN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2항에 따라 보도된 뉴스 제목을 통상의 방법으로 1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2항에 따라 보도된 뉴스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 나.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2017년 6월 5일까지 인터넷MBN 홈페이지 사회면 원조정대상기사의 텍스트 중 “두 남성은 허겁지겁 도망가고”의 표현을 “두 남성은 잠시 자리를 피하고”로 수정한다.
  5. 피신청인들은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들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로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6.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5. 29.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문지마 범죄에 맨손으로 맞선 태권도 관장』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6월 13일자 ‘굿모닝MBN’프로그램, 인터넷MBN 6월 13일자 ‘다시보기’ 섹션)
- 내 용
  - ▷ 앵커 : 지난달 서울에서 한 남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문지마 범죄’가 일어났었죠. 당시 자리에 있던 두 태권도 관장이 아니었다면 피해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 ▷ 기자 :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남성에게 파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달려듭니다. 양손에 흉기를 쥐고 있는 남성의 공격을 받은 남성들은 주변 의자를 집어들어 맞섭니다. 담소를 나누던 두 태권도 관장에게 느닷없이 달려든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 ▷ 이○○ / 서울 쌍문동 : “칼을 양손에 두 개를 들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시민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김 씨는 앞서 다른 행인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 ▷ 이△△ / 서울 정릉동 : “이 사람이 도망 못 가게 저희가 포위하듯이 (쫓았고) ‘신고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같이 소리치면서…”

결국 손에 큰 부상까지 입었지만, 두 사람은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 이△△ / 서울 정릉동 : “손이 다치고, 어디가 아프고 그런 정신은 없었어요.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같이 잡아야겠다’, 다른 주민들 피해 없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든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더 큰 참변을 막아냈습니다.

### 사례. 30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제보 급증의 부작용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서울시에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1622, 2017서울조정1623(병합) 각 손배청구
<b>신 청 인</b>	이 ○
<b>피신청인</b>	한국방송공사(KBS-1TV),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KBS미디어)
<b>중 재 부</b>	서울제6중재부
<b>접 수 일</b>	2017. 8. 26.
<b>처리결과</b>	각 조정성립(기사수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등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신청인의 블랙박스 신고 영상을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소유권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 속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은 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인터넷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로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민간 파수꾼 ‘블랙박스’ 제보 급증』 제하의 보도 (KBS-1TV 2017년 7월 8일자 ‘뉴스9’ 프로그램, KBS미디어 2017년 7월 8일자 뉴스면)

#### ■ 내 용

- ▷ 앵커 :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단속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만 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 ▷ 기자 :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듭니다. 뒤따르던 운전자는 이 장면을 고스란히 블랙박스 영상에 담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 블랙박스 신고자(음성변조) : “평소에도 그런 차 많이 보긴 했는데.. 화도 났고 그래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좀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죠.”
- 웬만해선 경찰 단속으로 잡기 힘든 깜빡이 미사용 차로변경입니다. 이런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올 들어 적발된 건수만 벌써 5만 8천여 건, 위반 정도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 고지서나 최소 경고장이 집으로 날아갑니다.
- ▷ 법규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황당하더라고요. 거기는 카메라도 없고... 경각심을 한 번 얻어 가지고 무조건 이제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변경을 하고...”
- 버스 뒤를 따라 전용차로를 달리는 암체 차량들.
- ▷ 신고자 : “53 노에 2000 노래방 할 때 ‘노.’”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골 신고 대상입니다.
- 별도 포상금이 없는데도 시민들의 제보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주정차는 올해 각각 30만 건이 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편리함 이면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에 별 제약이 없다 보니 악의적인 상습 민원이 폭주하는 데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불신사회가 초래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적인 해결을 보려는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일부 논란 속에 일상 속 불법을 감시하는 시민 파수꾼들의 카메라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 가. KBS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이 제공한 영상 부분을 삭제한다.
  - 나.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들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2.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해 피신청인들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0. 11.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기사 수정(신청인 영상부분 삭제)